

# 학 칙

제정 : 1969. 3. 1.

개정 : 2026. 5. 7.

주관부서 : 기획실 전략기획팀

유관부서 : 교무처 학사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조직·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0., 2000.2.22., 2011.9.26., 2017.11.8.>

**제1조의2(교육목표 및 인재상)** ① 우리 대학교는 구국·자주·자립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진리·봉사의 교시(校是)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② 전항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인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능동적 인재 :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재
2. 혁신적 인재 : 국가·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하는 인재
3. 헌신적 인재 :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인재

[본조신설 2017.11.8.]

**제2조(교육조직)** ① 우리 대학교는 대학, 대학원, 부설교육기관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9.26.>

② 전항은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③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2012.1.16., 2012.2.1., 2012.5.1., 2013.8.1.> <번호개정 2011.9.26.>

1. 죽전캠퍼스에는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 음악·예술대학, 프리무스국제대학, 퇴계혁신칼리지를 둔다. <개정 2015.2.26., 2015.4.1., 2016.3.25., 2017.7.26., 2020.02.28., 2022.5.18., 2024.2.29., 2024.4.30., 2026.5.7.>

2. 천안캠퍼스에는 외국어대학, 공공인재대학, 과학기술대학, 바이오융합대학,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율곡혁신칼리지를 둔다. <개정 2015.4.1., 2016.2.26., 2020.02.28., 2021.7.23., 2024.2.29., 2024.4.30.>

3. 우리대학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자유교양대학을 둔다. <신설 2020.02.28.>

4. <삭제 2023. 8. 16.>

④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공공·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보건·스포츠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건설대학원을 두고, 대학원 학

칙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0.2.22., 2002.2.6., 2004.2.1., 2005.10.17., 2006.10.20., 2007.10.22., 2009.10.26., 2011.9.26., 2012.1.16., 2014.11.18., 2021.12.31., 2026.2.26.> <번호개정 2011.9.26.>

⑤ 부설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⑥ 대학 및 대학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9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

⑦ 우리대학의 융합형 혁신 인재양성 및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0.01., 개정 2023.8.16.>

1. <삭제 2026.5.7.>

2.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융합대학 <신설 2023.8.16.>

### 제3조(대학) [본조삭제 2011.9.26.]

제3조의2(편제 및 입학정원) 각 대학·학부(전공)·학과의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7.27., 2009.8.31., 2011.9.26., 2022.3.31., 2022.8.18.>

[번호개정 2008.9.10.]

##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목개정 2011.9.26.]

제4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수업연한은 5년,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의예과 및 치의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개정 2016.2.26., 2020.2.28., 2025.1.22.>

③ 학칙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는 제외한다.

④ 전항의 수업연한의 단축(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6.]

제4조의2(재학연한)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9.26.]

##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목개정 2011.9.26.]

제5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89.12.15.,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 제5조의2(학기)** ①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5.7.>
- ②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기 개시일 전이라도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26.5.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7.>

[본조신설 2011.9.26.]

- 제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1.6.10., 1984.2.24., 2005.6.3., 2011.9.26.>
- ②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교과별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수업 또는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8.>

**제7조(정기휴업)**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6.10., 2011.9.26.>

1. 여름(하계)방학
2. 겨울(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법정공휴일
5. 그 밖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에 의한 선거일

- 제8조(임시휴업)** ① 입학고사, 졸업식,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6조의 수업일수에 저축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4.2.24., 2011.2.24., 2011.9.26.>

## 제4장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 제9조(부속기관 등)** ① 우리 대학교에는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둔다. <개정 1981.6.10. 1998.3.1. 2001.1.12. 2001.6.29. 2007.5.9. 2011.9.26.>
- ② 전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1. <삭제 2007.5.9.>
  2. <삭제 2007.5.9.>
  3. <삭제 2007.5.9.>
  4. <삭제 2001.1.12.>

## 제5장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목개정 2011.9.26.]

## 제1절 시기

**제10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 재입학 및 외국인학생의 입학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1977.11.9. 1978.2.24. 1981.6.10. 1984.2.24. 2009.6.24. 2011.9.26.>

## 제2절 자격

**제11조(신입학 자격)**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호의 졸업예정자가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자격이 상실된다.

[전문개정 1977.11.9. 1981.6.10. 2006.9.20.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2조(편입학 자격)** ① 정원 내 일반편입학은 3학년(의학과, 치의학과는 1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대학 2학년 수료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정원 외 편입학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2학년, 3학년,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1.12.31.>

③ 정원 외의 학사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 소지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우리 대학교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3년제 전문대학 의료인력 양성 관련 학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교육부 지침 등에 따른 특별편입학의 경우에는 편입학 학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전문개정 2011.9.26.]

**제13조(재입학 자격)** ① 재입학은 해당 학부·학과의 정원 또는 캠퍼스별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우리 대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2014.12.26.>

1. 자퇴 및 징계에 의한 제적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은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할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이전에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7.2.16., 2020.2.28., 2021.7.23., 2024.2.29.>

2. 학사경고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2회에 한한다. <신설 2017.2.16.>

3. 미복교, 미등록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신설 2014.12.26.>

4.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예과 및 본과)·약학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6.2.26.>

③ 재입학 허가 시기는 학기 시작 30일 이내로 하며, 재수강을 위하여 학기재수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을 소멸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4.2.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재입학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 2조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징계 중인 자가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3. 미등록 또는 미복교로 제적된 자 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전문개정 2011.9.26.]

### 제3절 절차

**제14조(입학지원 절차)** ①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정해진 전형유형별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 2006.9.20., 2011.9.26.>

1. <2006.9.20. 삭제>

2. <2006.9.20. 삭제>

3. <2006.9.20. 삭제>

4. <2006.9.20. 삭제>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재입학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2006.9.20., 2011.9.26.>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단계전형의 경우 전단계에서 탈락한 자의 차단계 전형료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06.9.20., 2011.9.26.>

**제15조(전형시기)** ① 입학지원자에 대한 전형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5.11.10., 2011.9.26.>

② 신입생 선발을 위한 모집방법(수시, 특차, 정시, 추가모집)은 총장이 정한다. <신설 1995.11.10.> <개정 1999.2.5.>

**제15조의2(전형방법)** 입학생 선발은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이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1.9.26.>

[본조신설 1995.11.10.]

**제15조의3(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시공정관리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5.11.10.>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5조의4(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에 관한 제도의 개발, 계획 심의 및 전형관리업무의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6.9.30.> <개정 2011.9.26.>

**제15조의5(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대학입학전형 중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관한 심의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12.26.>

**제16조(신입학·편입학·재입학 정원 및 허가)** ① 신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신입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89.2.16., 1993.7.10., 1995.11.10., 2006.9.20., 2011.9.26.>

② <삭제 2006.9.20.>

③ 편입학은 여석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정원 외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99.10.15., 2006.9.20., 2011.9.26., 2013.8.1., 2024.11.13.>

④ <삭제 2006.9.20.>

⑤ 재입학은 여석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1999.10.15., 2011.9.26., 2013.8.1., 2024.11.13.>

[제목개정 2011.9.26.]

**제16조의2(합격·입학취소)** 신입학 또는 편입학 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이라도 입학 및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1. 전형별 지원자격에 미달함이 확인되거나, 모집요강에 명기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2. 입학사정에 사용한 전형자료의 위·변조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3. 지원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자격서류 등 전형자료에 표절 및 허위사실 등 부정이 확인된 경우

- 4.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5. 대리시험 등 대학별고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입학에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7.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개정 1999.2.5., 2006.9.20., 2011.9.26., 2020.5.12.>

[본조신설 1995.11.10.]

**제17조** [본조삭제 1995.1.12.]

**제18조** [본조삭제 1995.1.12.]

**제19조(전부(과))** ① 전부(과)라 함은 우리 대학교 학생이 타 학부(전공)·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전부(과)와 캠퍼스 간 전부(과)로 구분한다. 다만,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8., 2025.1.2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과)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2.16.>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2011.11.10., 2012.12.13., 2013.8.1., 2014.12.26., 2015.6.25., 2015.11.20., 2016.2.26., 2017.2.16., 2017.7.26., 2018.6.4., 2019.5.1., 2020.2.28., 2021.7.23., 2021.10.01., 2022.5.18.>

1.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 퇴계혁신칼리지,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한국학과, 연기영상예술학과, 글로벌기초교육학부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5.1.22., 2025.12.29.>

2. 코스메디컬소재학과, 뉴뮤직학부,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울곡혁신칼리지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4.2.29., 2024.11.13., 2025.1.22.>

3. 주·야간 학부(과)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3.2.16., 2025.1.22.>

4. 정원 외 신·편입학한 자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4. 2. 29.>

5. 융합전공으로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1. 연기영상예술학과에서 공연영화학부로의 전부(과) <신설 2025.12.29.>

2.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의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또는 한국학과로의 전부(과) <신설 2025.12.29.>

[전문개정 2011.9.26.]

**제19조의2(전부(과) 이수과목)** 전부(과)한 자는 해당 대학학부(과)의 지정된 기초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95.11.10., 1999.3.26.>

[번호개정 2011.9.26.]

**제20조(학부제의 전공 진입시기)** ① 학부제 입학자의 전공 진입시기는 2학년 1학기로부터 한다. 다만, 공연영화학부, 미술학부는 예외로 한다. <신설 1997.4.1.×개정 1999.2.5., 2004.2.1., 2017.2.16., 2020.02.28.,

2022.3.28.>

② 학부제 전공분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4.1.> <개정 2011.9.26.>

[전문개정 2011.9.26.]

**제20조의2(무전공 입학자의 전공 배정 및 진입)** ① 무전공으로 입학한 퇴계혁신칼리지, 을곡혁신칼리지, 프리무스국제대학 글로벌기초교육학부의 전공 진입시기는 2학년 1학기로부터 한다.

② 퇴계혁신칼리지, 을곡혁신칼리지의 전공배정은 [별표 1]의 광역모집 유형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 내의 학부(전공) 또는 학과의 선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프리무스국제대학 글로벌기초교육학부의 전공배정은 입학 시 선택한 진입 학부(과)로 캠퍼스 제한 없이 가능하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배정을 불허한다.

1. 사범대학, 프리무스국제대학(국제경영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한국학과)

2. 공공인재대학(해병대군사학과),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본조신설 2025.1.22.]

## 제6장 휴학·복학·자퇴·제적 및 학사경고

**제21조(휴학)** ① 학생이 가사·질병·창업·입대 및 그 밖의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휴학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0.8.14., 1981.6.10., 1984.7.16., 2011.9.26., 2013.2.19., 2013.12.26.>

② 해병대군사학과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휴학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8.1.>

**제22조(휴학자의 학적)**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98.2.7., 2005.11.23., 2011.9.26., 2013.2.19.>

**제23조(입대휴학 기간)** [본조삭제 2025.5.28.]

**제24조(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4.2.24., 2011.9.26.>

**제2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를 확인된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26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등록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981.6.10., 2011.9.26.>

2.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개정 1981.6.10., 1989.2.16., 2011.9.26.>
3.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개정 1981.6.10., 2011.9.26.>
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1981.6.10., 1984.2.24., 2011.9.26.>
5.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신설 2025.1.22.>
6. <삭제 2006.5.15.>
7. 제59조제2항의 징계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06.5.15.> <개정 2011.9.26., 2025.1.22.>
8.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한 후 2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개정 1997.4.1., 2002.2.6., 2011.9.26.> <번호개정 2025.1.22.>

**제27조(학사경고)**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사경고 및 조치를 한다.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은 별도의 유급 규정에 따른다.

1.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2과목 이상이 과락이고 동시에 6학점 이상이 과락인 자,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대학(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즉시 상담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능력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학사경고를 받은 자가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5. 수업연한 초과자 및 정원 외 특례입학자 중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 1999.2.5., 1999.3.26., 2000.8.22., 2002.2.6., 2011.2.24., 2011.9.26., 2025.1.22.]

## 제7장 교과이수 및 졸업

### 제1절 교육과정

**제28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정과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97.9.12., 1999.2.5., 2004.2.1., 2011.9.26., 2017.7.26., 2020.02.28., 2021.3.8.>

**제28조의2(최소·심화전공 인정학점)** ① 학생에게 다수의 전공을 이수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공별 특성에 따라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및 심화전공인정학점제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10.15., 2005.11.23., 2011.9.26.>

② 최소전공 인정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고, 심화전공 인정학점은 학과(전공)의 편성학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7.9.12.> <개정 1999.2.5., 1999.10.15., 2002.2.6., 2004.2.1., 2005.11.23., 2011.9.26., 2018.1.30.>

**제28조의3(공학교육과정)** ①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우 공학전문교육과정과 별도의 공학일반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

② 공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제28조의4(모듈형 교육과정)** ① 각 학과(전공)는 전공교육과정 내 분야별로 특화된 모듈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듈 내 구성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모듈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모듈형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2.10.]

**제29조(교과이수단위)**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씩 1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교과목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대학이 별도의 이수단위나 시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실습·실기·설계·집중수업·이동수업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2.3.30., 2004.2.1., 2005.6.3., 2005.11.23., 2008.5.20., 2011.9.26., 2017.11.8., 2025.7.23.>

② <삭제 2025.7.23.>

## 제2절 수업

**제30조(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 회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2025.5.28.>

**제30조의2(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원격수업·현장실습수업·집중수업·이동수업·혼합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번호신설 2019.5.1.> <개정 2021.2.10.>

②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1.> <개정 2021.6.22.>

[본조신설 2017.11.8.]

**제3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없다. <2011.9.26. 개정>

②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③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승인없이 학기 중에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81.6.10., 2011.9.26.>

④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법과대학, AI융합대학,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2017.7.26., 2020.02.28., 2026.5.7.>

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RISE사업 관련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7.23.> <개정 2024.2.29., 2026.5.7.>

**제31조의2(수강신청학점이월제)** 직전학기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미신청한 학점을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5.5.28.>  
 [본조신설 2013.2.19.]

###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2조(시험)** 시험은 매학기말 또는 수시로 수업한 범위 내에서 행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서는 재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8.3.6., 1989.12.15., 1992. 3.30., 1999.3.26., 2011.2.24., 2011.9.26.>

**제33조(시험자격·평가)** ①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1(원격수업은 접속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해당 과목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으며 과락 처리한다. 다만,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2011.9.26., 2017.7.26. 2024.2.29.>

②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중간, 학기말, 수시시험 및 과제물 성적)을 100분의 80, 출석성적을 100분의 20의 비율로 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89.2.16., 2011.9.26.>

③ 병역, 질병, 임신·출산·육아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 직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시험(개인특별시험)·출석·과제물 등을 통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1977.11.9.>  
 <개정 1981.6.10., 2011.9.26., 2013.2.19., 2024.2.29.>

④ <삭제 2017.7.26.>

**제34조(판정)** ①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등급과 점수·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성적 평점평균 및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9.2.16., 2011.9.26., 2025.1.22.>

등 급	점 수	평 점
A +	95 - 100	4.5
A	90 - 94	4.0
B +	85 - 89	3.5
B	80 - 84	3.0
C +	75 - 79	2.5
C	70 - 74	2.0
D +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0

② <삭제 2011.9.26.>

### 제4절 이수의 인정 및 졸업

**제35조(학점인정)**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별 학업성적 평가는 D등급 이상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하고, F등급은 학점취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② 수시합격생이 입학 전에 우리 대학과 학점인정 등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졸업요구 학점으로 포함한다. 다만, 입학 전 취득학점은 첫 학기 수강신청 허용 학점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9.>

③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연간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21.3.8.>

④ 창업교과 대체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4.25.>

⑤ <삭제 2020.02.28.>

⑥ 집중수업·이동수업은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인정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11.8.>

⑦ 신입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학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0.02.28.>

[제목개정 2011.9.26.]

**제36조(학점인정 시기)** 학점인정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이미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37조(수료학점 이수기준)** ① <삭제 2013.2.19.>

② <삭제 11.2.2.4.>

③ 학년별 수료인정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6.10., 1984.2.24., 1989.12.15., 1992.3.30., 1999.2.5., 1999.3.26., 2009.3.1., 2011.9.26.>

1. 1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1 이상 <개정 2023.2.16.>

2. 2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2 이상 <개정 2023.2.16.>

3. 3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3 이상 <개정 2023.2.16.>

4. 4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개정 2023.2.16.>

5. 5년제 학제의 경우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1학년 5분의 1 이상, 2학년 5분의 2 이상, 3학년 5분의 3 이상, 4학년 5분의 4 이상, 5학년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개정 2023.2.16.>

6. 의예과의 학년당 수료 인정학점은 41학점 이상 <개정 2025.1.22.>

7. 치의예과의 학년당 수료인정 학점은 38학점 이상 <신설 2025.1.22.>

8. 2023학년도 3월 이전 편입학한 약학과 3학년은 제3항제1호, 4학년은 제3항제2호, 5학년은 제3항제3호, 6학년은 제3항제4호의 수료인정학점과 동일하게 적용 <신설 2014.12.26., 개정 2023. 8. 16.> <번호개정 2025.1.22.>

9. 6년제 학제의 경우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1학년 6분의 1 이상, 2학년 6분의 2 이상, 3학년 6분의 3 이상, 4학년 6분의 4 이상, 5학년 6분의 5 이상, 6학년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신설 2023. 8. 16.> <번호개정 2025.1.22.>

- 10. 퇴계혁신칼리지, 율곡혁신칼리지 수료인정 학점은 33학점 이상 <신설 2025.1.22.>
- 11. 프리무스국제대학의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수료인정 학점은 33학점 이상 <신설 2025.1.22.>
- ④ <2013.2.19. 삭제>
- ⑤ <2013.2.19. 삭제>
- ⑥ 재학생은 학기가 개시되면 취득 학점에 관계없이 자동 진급한다.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 편입생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개정 2025.12.29.>

[제목개정 2013.2.19.]

- 제37조의2(학점교류 및 인정)** ① 우리 대학교는 국내외 고등학교, 대학(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교육과정 운영 등의 협약에 의하여 학점교류 및 인정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8.22., 2005.6.3., 2009.6.24., 2011.9.26., 2012.11.7.>
- ② 국내외 대학에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자는 전적 대학의 인정 학점 이외에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22., 2005.6.3., 2009.6.24., 2011.9.26.>
- ③ 재학 중 학사학위 과정과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④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대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19.> <개정 2018.6.4., 2021.4.23.>
- 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관련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개정 2024.2.29.>
- ⑥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학기당 최대 1학점, 재학 기간 중 총 3학점까지 우리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 ⑦ 제1항부터 제6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9.12.> <개정 2011.9.26., 2013.2.19., 2021.7.23., 2025.1.22.> <번호개정 2013.2.19., 2021.7.23., 2025.1.22.>

- 제37조의3(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학점취득)** ①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기 또는 방학 중 전공과 관련한 기관 등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1.11.10.>
- ② 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2.2.6.> <개정 2011.9.26., 2011.11.10.>

[제목개정 2011.11.10.]

**제38조(특별시험)** [본조삭제 2025.7.23.]

**제39조(특별시험 과목)** [본조삭제 2011.9.26.]

**제40조(특별시험 실시시기)** [본조삭제 2011.9.26.]

**제41조(특별시험 평가위원회)** [본조삭제 2011.9.26.]

**제42조(특별시험 평가방법)** [본조삭제 2011.9.26.]

**제43조(특별시험 취득학점)** [본조삭제 2011.9.26.]

**제44조(계절학기 학점취득)** 계절학기 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4.2.24., 1989.12.15., 1992.3.30., 1995.1.12., 1997.4.1., 2011.9.26.>

**제45조(기준학점)** ①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학점을 참작하여 최저학점 또는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정해진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1984.2.24., 1999.2.5., 2011.9.26.>  
② 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③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 편입생의 경우 지정된 보충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개정 2025.12.29.>

**제46조(다전공)** ①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것 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4.2.24., 1999.2.5., 2002.2.6., 2011.9.26., 2020.02.28., 2022.5.18., 2022.10.14., 2024.2.29.>  
② 복수전공은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최대 2개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1984.2.24., 1995.1.10., 1997.4.1., 1999.2.5., 2011.9.26., 2022.5.18., 2022.10.14.>  
③ <삭제 2022.10.14.>  
④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 내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관련 전공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2.24., 1997.4.1., 1999.2.5., 2011.9.26., 2021.02.10., 2024.2.29.> <번호개정 2022.5.18.>  
⑤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선택교양을 제외한 교양교육과정 및 전공교육과정 내에서 지정한 교과목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관련 전공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개정 2021.2.10., 2024.2.29., 2025.1.22.> <번호개정 2022.5.18.>

**제46조의2(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①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으로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으로 복수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46조의3(자율설계전공)** 자율설계전공은 학생이 새로운 전공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으로 복수전공으로

만 이수가 가능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

- 제47조(졸업요건)** ① 졸업요구학점 130학점 이상의 취득과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대학 및 학부(과)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84.2.24., 1989.2.16., 1989.12.15., 1997.9.12., 1999.3.26., 2003.1.30., 2008.2.4., 2008.5.20., 2009.3.1., 2011.2.24., 2011.6.15., 2012.9.17., 2013.2.19., 2016.2.26., 2017.7.26., 2020.02.28., 2023.2.16>
1. 법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이버보안학과, 해병대군사학과 140학점 이상 <개정 2022.10.14., 2025.1.22.>
  2.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65학점 이상 <개정 2025.1.22.>
  3. 프리무스국제대학 국제경영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한국학과,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연기영상예술학과 120학점 이상 <개정 2025.1.22.>
  4. 의예과 수료 82학점 이상 <개정 2025.1.22.>
  5. 의학과 177학점 이상 <개정 2025.1.22.>
  6. 치의예과 수료 75학점 이상 <개정 2022.10.14., 2025.1.22.>
  7. 치의학과 167학점 이상 <신설 2025.1.22.>
  8. 약학과 226학점 이상 <신설 2025.1.22.>
- ②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6.15.>
- ③ 졸업논문은 학과(전공) 특성에 따라 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및 그 밖의 학과(전공)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 인정하며,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주전공 외에 이수전공에 따라 별도의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는 제외한다. <개정 1995.11.10., 1997.9.12., 1999.3.26., 2003.1.30., 2011.9.26., 2013.2.19., 2020.02.28., 2022.5.18., 2024.2.29.> <번호개정 2011.6.15.>
- ④ 졸업논문의 작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9.12., 2003.1.30., 2011.9.26.> <번호개정 2011.6.15.>
- ⑤ 입학 후 사회봉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04.2.1., 2011.9.26., 2019.11.15.> <번호개정 2011.6.15.> <개정 2024. 2. 29.>
- ⑥ 공학전문교육과정 및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자의 졸업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2.7.> <번호개정 2011.6.15.>
- ⑦ 재학 중 각 학부(과)별로 설정된 졸업인증기준 이상의 공인외국어 성적을 취득하거나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임상실습, 영어원어강의 중 해당 영역의 졸업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대체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 2014.4.25., 2023.2.16., 2025.1.22.> <번호개정 2011.6.15., 2017.2.16.>
- ⑧ 졸업대상자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조기졸업 심사 합격자 및 수료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10.31.> <개정 2011.9.26., 2011.11.10., 2013.2.19., 2019.5.1., 2022.5.18., 2025.1.22.> <번호개정 2011.6.15.>
- ⑨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더라도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1.2.24.> <번호개정 2011.6.15.> <개정 2011.9.26.>

⑩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프리무스국제대학 국제경영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한국학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개정 2011.9.26., 2016.3.25., 2018.2.28., 2020.02.28., 2025.1.22.>

**제47조의2(최소 및 심화전공)** ① 주전공(제1전공)의 최소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의 최소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심화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심화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제48조(필수요구 학점)** 졸업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라도 각 학년별 교양 및 전공 필수요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원의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2017.2.16.>

[제목개정 2011.9.26.]

**제49조(가을졸업)** 봄졸업 대상자가 취득학점이 부족하여 봄졸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 학기에 졸업요구 학점을 충족하면 가을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16., 2011.9.26., 2025.1.22.>

**제50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국문학위는 별지 서식 1-1, 영문학위는 별지 서식 1-2로 하며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2013.2.19., 2013.12.26.>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및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의 별지 서식 1의 학위증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별표 1과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1981.6.10., 1999.2.5., 2003.1.30., 2011.9.26., 2019.5.1., 2025.5.28.>

③ 전문공학사를 수여하는 학과의 경우, 공학전문교육과정과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를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수여한다. <신설 2007.2.7.> <개정 2007.6.14., 2008.2.4., 2011.9.26., 2012.12.13., 2013.2.19., 2013.12.26., 2025.2.20., 2025.7.23.>

④ 건축학사를 수여하는 학과의 경우, 건축학교육인증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를 별표 4와 같이 수여한다. <신설 2010.7.1.> <개정 2011.9.26., 2012.12.13., 2013.2.19., 2025.7.23.>

⑤ 국내·외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6.4.>

**제51조(학위취소)** 학위 수여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 2025.7.23.>

**제51조의2(학적정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신상정보 변경으로 학적부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 학적기본정보를 정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0.]

## 제8장 학생활동

**제52조(총학생회)** 구국·자주·자립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진리탐구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협동심 배양을 위하여 총학생회를 두며,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53조(회비)** 총학생회 회원의 학생회비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9.12., 2011.9.26.>

**제54조** [본조삭제 1992.3.30.]

**제55조(분담지도교수)**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상담 및 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0.>

**제56조(학생활동의 범위)**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92.3.30.>

**제57조(승인사항)**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1.6.10., 1992.3.30., 2011.9.26., 2013.4.2., 2017.7.26.>

1. 교내의 30명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 교내초청

**제58조(간행물의 발간)** 학생단체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2.3.30., 2011.9.26.>

**제59조(포상 및 징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공로가 뛰어난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7.9.12., 2006.5.15., 2011.9.26.>

**제59조의2(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11.2.24.]

제60조 [본조삭제 1995.1.12.]

제61조 [본조삭제 1992.3.30.]

## 제9장 직제

제62조(직제) 우리 대학교의 직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 제10장 교수회의

[제목개정 2011.9.26.]

제63조(교수회의) ①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둔다. <개정 2011.9.26.>

② 교수회의는 전체 교수회의와 대학별 교수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1999.3.26., 2002.6.10., 2011.9.26.>

③ 교수회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3.26., 2002.6.10., 2011.9.26.>

④ 전체 교수회의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의는 대학장이 소집하고, 각각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9.3.26., 2002.6.10., 2011.9.26.>

⑤ 총장, 부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1999.3.26., 2002.6.10.>

제64조(기능) 교수회의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편입학·재입학 등),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1.6.10.]

제65조(회의소집) ① 교수회의는 재적 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② 그 밖에 교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9.26.>

## 제11장 대학평의위원회

[본장신설 2006.9.20.]

제66조(대학평의위원회) ①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9.26.>

② 대학평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6.9.20.]

### 제12장 등록금심의위원회

[본장신설 2011.2.24.]

**제66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우리 대학교 등록금 책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9.26.>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11.2.24.]

### 제13장 교무위원회

[번호개정 2006.9.20. 2011.2.24.]

**제67조(교무위원회)** 교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1981.6.10., 1997.9.12., 2006.9.20., 2006.9.20.]

**제67조의2(구성 및 기능)**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대학장, 실·처장, 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디지털정보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부서장도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7.4.4., 1992.3.30., 1995.1.12., 1997.9.12., 1997.10.28., 1997.11.26., 1998.12.8., 1999.3.26., 1999.5.7., 1999.10.15., 2002.6.10., 2004.4.30., 2005.10.17., 2006.5.1., 2007.3.7., 2008.9.10., 2009.6.24., 2010.10.8., 2011.9.26., 2012.1.16., 2012.2.1., 2013.1.10., 2013.2.19., 2013.4.2., 2014.4.25. 2015.4.1., 2016.3.25., 2018.11.19., 2019.11.15., 2023.8.16., 2024.4.30., 2025.9.2., 2025.12.29.>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11.26.> <개정 2006.9.20., 2011.9.26.>

[번호개정 2006.9.20.]

**제68조(회의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 제14장 대학원 및 학위

[번호개정 2006.9.20., 2011.2.24.]

**제69조(대학원 및 학위)**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 제15장 등록금, 그 밖의 비용징수

[제목개정 2011.9.26., 2023.2.16.]

**제70조(등록금)** 학생은 등록금(입학 실비용 포함)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2023.2.16.>

**제71조(입학 실비용)** 입학 실비용은 입학자(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에게 부과하며 입학 첫 학기 등록금에 포함한다. <개정 1981.6.10., 1988.3.6., 2011.9.26., 2023.2.16.> <제목개정 2023.2.16.>

**제72조(휴학자의 등록금)** 휴학자는 휴학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6.10., 1999.2.5., 2011.9.26., 2025.7.23.>

**제73조(등록금 감면제한)** 등록금은 결석과 징계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6.10., 2025.7.23.>  
[제목개정 2011.9.26.]

**제74조(그 밖의 비용징수)**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 2013.4.2.>  
[제목개정 2011.9.26.]

**제75조(납부기간)** 등록금(입학 실비용 포함), 그 밖의 납입금 금액 및 납부기간은 직전 학기 말에 이를 공시한다. <개정 1981.6.10., 2005.11.23., 2011.9.26., 2023.2.16.>  
[제목개정 2011.9.26.]

**제76조(등록금 등의 반환)** 등록금 반환 및 반환금액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1981.6.10., 1997.11.26., 2005.11.23., 2011.9.26.>

**제77조(장학금)** 장학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87.4.4., 2011.9.26.>

## 제16장 특별학생

[번호개정 2011.2.24.] [제목개정 2011.9.26.]

**제78조(입학)** 외국인으로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 외에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79조(이수증서)** 외국인 학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1981.6.10.>

**제80조(편입학)** 외국인 학생으로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81조(준용)** 특별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 제17장 공개강좌,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등록생

[번호개정 2006.9.20., 2011.2.24.] [제목개정 2025.5.28.]

**제82조(공개강좌)** 우리 대학교의 직능,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1981.6.10., 1997.3.4., 2011.9.26., 2025.5.28.>

② <삭제 2025.5.28.>

**제83조(학점은행제)**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의 학점 인정범위 및 학위종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2.2.6.]

**제83조의2(시간제등록생)**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시간(학점) 단위로 수업을 듣는 시간제등록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93.3.30., 1997.3.4., 2011.9.26., 2025.5.28.>

②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1997.3.4.> <개정 2025.5.28.>

③ <삭제 2025.5.28.>

④ <삭제 2025.5.28.>

⑤ <삭제 2025.5.28.>

**제84조(수강허가 및 취소)** [본조삭제 2025.5.28.]

**제85조(수강료)** [본조삭제 2025.5.28.]

### 제18장 규정심의위원회

[본장신설 1997.11.26.] [번호개정 2006.9.20., 2011.2.24.]

**제86조(규정심의위원회)** 모든 규정(학칙 및 대학원 학칙 제외)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9.20., 2011.9.26.>

[본조신설 1997.11.26.]

### 제19장 정보화책임관

[본장신설 2002.6.10.] [번호개정 2006.9.20., 2011.2.24.]

**제87조(임명)** 각종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며, 디지털정보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1.9.26., 2012.1.16., 2013.4.2., 2019.11.15., 2024.4.30.>

[본조신설 2002.6.10.]

**제88조(임무)**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각종 정보자원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교내 행정망을 통한 업무처리의 간소화 추진

[본조신설 1997.11.26.]

**제89조(위원회)** 정보화책임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2.6.10.]

## 제20장 산학협력기관

[본장신설 2005.3.1.] [번호개정 2006.9.20., 2011.2.24.]

**제90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전캠퍼스에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천안캠퍼스에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1.9.26., 2025.12.29.>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91조(중소기업협력단)** [본조삭제 2010.5.26.]

## 제21장 학칙 개정 절차

[본장신설 2005.3.1.] [번호개정 2006.9.20. 2011.2.24.]

**제92조(학칙 개정)** 학칙 개정안은 일정기간 이를 사전 공고하여야 하고,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개정 2006.9.20., 2011.9.26., 2013.4.2., 2021.6.22.>

[제목개정 2021.6.22.]

## 제22장 교원의 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

[본장신설 2005.6.3.] [번호개정 2006.9.20., 2011.2.24.]

**제93조(교원의 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1.9.26.>

### 제23장 학교기업

[본장삭제 2009.3.1.] [번호개정 2011.2.24.]

제94조(학교기업설치) [본조삭제 2009.3.1.]

제95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본조삭제 2009.3.1.]

제96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본조삭제 2009.3.1.]

### 제24장 자체평가

[본장신설 2009.6.24.] [번호개정 2011.2.24.]

제97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67.3.1.)

제1조(경과조치) ① 1967. 3. 1.자로 단국대학 1부에 재학중인 자는 단국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설치된 해당학과, 해당 학년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② 단국대학 2부에 재학 중인 자는 단국대학 학칙에 의거, 졸업식까지 존속한다.

③ 단국대학의 학적관계 및 일체의 서류는 인가와 동시에 단국대학교에서 인수 관리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6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68.1.1.)

이 학칙은 1968.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69.1.1.)

이 학칙은 1969.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69.3.1.)

이 학칙은 196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0.3.1.)

제1조(경과조치) 학과명 변경 및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3.1.)

이 학칙은 197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3.1.)

제1조(경과조치) 학과명이 변경된 요업공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3.3.1.)

이 학칙은 1973.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3.1.)

제1조(경과조치)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1.1.)

이 학칙은 197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3.1.)

이 학칙은 197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3.1.)

제1조(경과조치) 1974학년도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졸업년도까지 존속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8.1.)

이 학칙은 1975. 8.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3.1.)

이 학칙은 197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4.12.)

이 학칙은 197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1979.11.9.)

이 학칙은 197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1978.2.24.)

제1조(경과조치) 변경된 학과 명칭은 구 학칙에 의하여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3.22.)

이 학칙은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4.16.)

이 학칙은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9.1.)

이 학칙은 197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2.15.)

이 학칙은 1980. 2.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8.14.)

이 학칙은 1980. 8.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3.1.)

이 학칙은 198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6.10.)

제1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3조 및 제27조는 1981학년도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3.1.)

제1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3조는 1982학년도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2.24.)

제1조(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1983.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3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 2. 24.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별표1(1-1, 1-2, 1-3, 1-4)은 198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9.1.)

이 학칙은 1984.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3.29.)

제1조(경과조치) 1982학년도 이전에 문리과대학 응용미술학과에 입학하여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하게 되면 동 복학자는 도예학과의 응용미술을 전공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5. 3.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3.3.)

이 학칙은 1987. 3. 3.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4.4.)

이 학칙은 1987. 4. 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8.29.)

제1조(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042호, 1986. 12. 31.) 부칙 제2항에 의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정원이 감축된 해당학과의 졸업정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2조(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 8. 29.)부칙 제3항에 의거 1983. 12. 22. 부터 1987. 7. 10. 사이에 학원사태와 관련되어 제적된 자는 제3조, 제13조 단서규정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 정원이 초과될 때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3.6.)

제1조(경과조치) 1988학년도에 폐과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가 1988학년도 이후에 복학하게 되는 경우 그 소속을 음악대학의 기악과, 성악과 또는 작곡과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종전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2.16.)

제1조(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치의학과는 199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의 정원에 대하여는 이 학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동전) 이 학칙 제34조의 규정은 198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가 1학년 1학기 복학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조(동전) 이 학칙 제47조 1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1991학년도 졸업예정자(1990학년도 조기졸업자 포함)부터 적용하며 1990학년도 이전의 졸업예정자 중 졸업정원 내에 포함되거나 졸업자격 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졸업정원에서 제외되고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2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동전) 1981학년도 2월말일 이전 입학자의 재입학은 1990학년도(치의학과는 1992년도)까지는 졸업정원이 적용되는 학년에 재입학할 경우에 한하여 졸업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동전) 1988학년도 이전에 법정대학 법학과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1989학년도 이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을 각각 법과대학 법학과 법과대학 법학과로 한다.

제6조(동전) 1989학년도에 회화과에서 서양화과로 학과명이 변경된 예술대학 회화과에 1988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가 1989학년도 이후에 복학하게 되는 경우 그 소속을 예술대학의 서양화과 또는 동양화과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종전의 회화과 소속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제7조(동전) 1988학년도 이전에 법정대학 행정학과(주, 야), 정치외교학과, 지역개발학과에 입학하여 1989학년도 이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을 각각 정경대학의 행정학과(주, 야), 정치외교학과, 지역개발학과로 한다.

제8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9. 3.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졸업자에 대한 학위증서의 전공 표시는 별표 2에 따라 1989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12.15.)

제1조(경과조치) 1989학년도 이전에 이공대학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 이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전자계산학과는 자연과학대학으로,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재료공학과, 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는 공학대학으로, 의예과는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2조(동전) 1990학년도 계산통계학과에서 전산통계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된 문리과대학 계산통계학과에 1989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 이후에 재학하는 자는 그 소속을 전산통계학과로 한다. 다만, 학생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종전의 계산통계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동전) 학칙 제3조 별표 1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0. 3.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3항은 1989. 12.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2.4.)

이 학칙은 1990. 1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3.1.)

제1조(경과조치) 199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에 대하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3.30.)

제1조(경과조치) 1990년도 이전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91학년도 이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을 행정학과는 사회과학대학으로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를 경상대학으로 한다. <다만, 사회과학대학 정책학과, 체육대학 무용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위명은 별표 2에 따라 1992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2. 3.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3.31.)

제1조(경과조치) 1992학년도 이전에 문리과대학에 입학하여 1993학년도 이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을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도예학과, 시각디자인학과는 문과대학으로, 화학과, 전산통계학과, 식품영양학과는 이과대학으로 한다.

제2조(동전) 1993학년도에 열대농학과에서 국제농업개발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된 농과대학 국제 농업개발 학과에 199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1993학년도 이후에 재학하는 자는 그 소속을 국제농업개발학과로 한다. 다만, 학생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종전의 열대농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1987. 7. 11. 부터 1993. 2. 24. 까지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학칙 제3조, 제13조, 제16조,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이 허가되어 정원이 초과될 때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 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 4. 30. 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7.16.)

이 학칙은 1993.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2.26.)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2.)

이 학칙은 1995.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2.28.)

제1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1995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5. 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10.)

이 학칙은 1995. 11. 10. 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부제 시행은 1996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2.13.)

이 학칙은 1996. 2. 13.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4항의 변경규정은 1996.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3.4.)

이 학칙은 1997. 3. 4. 부터 시행하되, 1997.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4.1.)

제1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인문과학대학 몽골학과, 농과대학 축산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인문과학대학 몽골어과, 농과대학 환경자원공학과, 농과대학 동물자원공학과에 각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변경 전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제2조(학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학부제로 통합된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1999학년도까지는 당해 학과 소속으로 하되, 199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하는 자는 해당학부의 소속으로 한다. 다만, 입학당시 학과와 동일한 전공을 선택한 자가 졸업여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 4. 1. 부터 시행하되, 1997.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7.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2.)

제1조(경과조치) 제28조 및 제28조의 1은 1996학년도 이후 입학자(1996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2.7.)

제1조(경과조치)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의 신문방송전공이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로 독립 개편됨에 따라 1996, 1997학년도에 사회과학부에 입학하여 휴학(제적)한 자가 1998학년도 이후 언론홍보영상학부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재입학)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과학부 또는 언론홍보영상학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 학부의 최소전공 인정학점은 반드시 취득한(취득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6.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8.)

이 학칙은 1998. 12. 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5.)

제1조(교육편제조정내역) 이 학칙 제3조(별표 1)와 관련한 교육편제의 조정내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2조 및 제3조(별표 1)와 이 부칙 제1조(별표 3)는 1999학년도 입학자(199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부칙 제2조와 달리 적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통합(천안캠퍼스 법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을 통합하여 법정대학으로)에 따라 종전대학 소속 학부, 학과의 통합대학으로의 소속변경과 대학명칭의 변경(농과대학을 생명자원·환경대학으로)은 시행일 현재 전 재학생에 적용한다.

2. 학생모집 중지 학과의 폐과에 관련된 사항

가. 1999학년도부터 신입생모집이 중단된 학부(과)(정경대학 야간도시계획학과, 야간 방송영상학부, 공과대학 야간 전기공학과, 법정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예술대학 연극영화과, 국악과)는 2002. 2. 28.자로 폐과한다.

나. 폐과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재수복학 또는 재입학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소속을 변경하여 복학 및 재입학을 허용한다.

기존 소속		복학 및 재입학 소속	
정경대학	도시계획학과(야간)	정경대학	도시 및 지역학부
	방송영상학부(야간)		언론영상학부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야간)	공과대학	제1공학부
법정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정경대학	언론영상학부
예술대학	연극영화과	문과대학	연극영화과
	국악과	음악대학	음악학부(국악전공)

다. 다만, 나목과 같이 복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입학당시 소속캠퍼스 타 학부(과)로 전부(과)하여 복학, 재입학을 허용(의과대학, 치과대학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부(과)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라. 가목에서 규정한 학부(과) 재학생이 휴학(또는 제적 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입학당시의 학부(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학년이 없는 경우(폐과일까지 학위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나목 및 다목을 준용 한다.

3. 예술대학 무용학과의 소속대학 변경은(체육대학에서 예술대학으로) 시행일 현재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체육대학 무용과로 입학한자가 휴학(또는 제적 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 예술대학 무용과로 복학(재입학) 하여야 한다.

4.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휴학(또는 제적 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하고자 할 때 입학당시의 학부(과)가 변경(학부가 다른 학부로 또는 학과가 학부로 개편)되어 입학한 학부(과)가 없어지거나 있어도 복학(재입학)할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 변경된 학부로 복학(재입학) 하여야 한다.

5. 1998(입학)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2001(졸업)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부, 학과로 졸업하나 2002졸업학년도부터는 이 학칙 제2조 <별표 1-4>의 소속으로 졸업한다

6. 농과대학 식물자원학부의 “국제농업개발” 전공은 생명자연·환경대학 환경과학·경제학부의 “환경생물학” 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7. 이 부칙 제2호 및 4호와 관련하여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휴학(또는 제적 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을 할 경우 변경된 학과 또는 학부의 해당 전공(입학당시의 해당학과 또는 종전소속학부의 주전공) 또는 동일 학부내 타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동전) 이 학칙 제2조 및 제3조는 교원 및 조교의 소속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전) 제28조 및 제28조의 2는 1999학년도 입학자(199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26.)

제1조(단과대학폐지) 이 학칙 제2조 및 제3조(별표 1)의 교육편제 중 단과대학을 폐지한다.

제2조(교육편제 조정내역) 이 학칙 제3조(별표 1)와 관련한 교육편제의 조정내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적용) 이 학칙 중 제2조 및 제3조는 1999. 3. 1일 현재 전재학생과 교원 및 조교에게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종전 천안캠퍼스 사회과학대학소속 학생의 학적 및 전공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1995학년도 이전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또는 정책학과에 입학한 자와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입학자 중 행정학 또는 정책학전공 이수자(또는 희망자)의 경우

가. 1996학년도 내지 199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사회과학부로 소속하며, 학부내에서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1999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법정학부로 소속하며, 학부내에서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1995학년도 이전에 사회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 또는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입학자 중 도시행정학전공 이수자(또는 희망자)의 경우

가. 1996학년도 내지 199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사회과학부로 소속하며, 학부내에서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1999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서울캠퍼스 지역 및 도시계획학부로 소속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천안캠퍼스 내 타학부(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제외)로 전부복학(재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부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입학자 중 신문방송학 이수자(또는 희망자)가 1999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서울캠퍼스 언론영상학부로 소속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원할 경우 천안캠퍼스내 타학부(의학부 및 치의학부 제외)로 전부복학(재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의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제1조(경과조치) ① 1995학년도 이전에 체육대학 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 사회체육학과에 입학한 자가

1996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에 소속하며, 입학 당시의 학과에 관계없이 생활체육전공, 운동처방전공, 스포츠경영학 전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복학(재입학)전에 취득한 전공학점은 복학(재입학)후에 선택한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입학자 중 신문방송학 전공 이수자(또는 희망자)가 199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언론홍보영상학부로 소속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타학부(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제외)로 전부복학(재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1998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입학한 자 중, 199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서울캠퍼스 언론영상학부로 소속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원할 경우 천안캠퍼스내 타학부(의학부 및 치의학부 제외)로 전부복학(재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제1조(교육편제 조정내역) 이 학칙 제3조(별표1)와 관련한 교육편제의 조정내역은 별표3과 같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중 제2조 및 3조는 2000. 3. 1. 현재 전재학생과 교원 및 조교에게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방송영상정보학부(야)의 명칭을 언론영상학부(야)로 변경하고, 학부 내 전공은 언론홍보학, 방송영상학을 둔다.

②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천안캠퍼스 건축공학전공이 서울캠퍼스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1998학년도 이전에 공학대학 건축공학과로 입학하였거나, 1999학년도 공학부에 입학한자 중 건축공학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으로 복(재입)학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캠퍼스 소속으로 하고, 제1전공은 건축(공)학을 전공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원할 경우 천안캠퍼스 내에서 의,치과대학을 제외한 타학부(과)로의 전(과)복(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의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③ 위②항과 관련하여 서울캠퍼스로 소속이 변경된 학생의 경우 수업은 원칙적으로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하되 서울캠퍼스의 수업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천안캠퍼스에서 실습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④ 1998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에 입학한자가 1999학년도 이후 입학 한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재입)학 할 경우 행정학전공 및 정책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학부에 소속하며 도시행정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에는 서울캠퍼스 도시 및 지역학부 또는 사회과학부로 소속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원할 경우 천안캠퍼스 내에서 의, 치과대학을 제외한 타학부(과)로의 전부(과) 복(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의 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자가 휴학(또는 제적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 하고자 할 때 입학 당시의 학부(과)가 변경(학부가 다른 학부로 또는 학과가 학부로 개편)되어 입학한 학부(과)가 없어지거나 있어도 복학(재입학)할 학년이 없을 경우 변경된 학과 또는 학부로 복학(재입학) 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된 학과 또는 학부의 해당전공(입학당시의 해당학과 또는 중전학부의 주전공) 또는 동일학부 내 타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22.)

이 학칙은 2000. 8.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

이 학칙은 2001.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1.)

제1조(교육편제조정내역) 이 학칙 제3조(별표1)와 관련한 교육편제 조정내역은 별표1-3과 같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2조 및 제3조(별표 1)와 이 부칙 제1조(별표1-3)는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제1조(적용) 이 학칙 제47조제4항은 2001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편입한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2.6.)

제1조(경과조치) ① 2002학년도 이전에 4년제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제1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공학전공으로 입학한 자는 5년제 건축대학 건축학과로 복학 및 졸업 할 수 없다.

② 1998학년도에 경상대학 경영학부(야)로 입학한 자와 1999학년도에 경영학부(야), 2000, 2001학년도에 경상학부(야)로 입학한 자중 경영정보학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2002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재입)학 할 경우, 소속을 경상대학 경상학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휴학(또는 제적 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 하고자 할 때 입학당시의 학부(과)가 변경(학부가 다른 학부로 또는 학과가 학부로 개편)되어 입학한 학부(과)가 없어지거나 있어도 복학(재입학)할 학년이 없을 경우 변경된 학과 또는 학부로 복학(재입학) 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된 학과 또는 학부의 해당전공(입학당시의 해당학과 또는 종전학부의 주전공) 또는 동일학부내 타전공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 제28조의2제2항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은 35학점으로 한다.

제3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이 학칙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학칙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이 학칙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학칙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30.)

이 학칙은 2004. 4.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학칙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학칙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3.)

이 학칙은 2005. 6.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7.)

제1조(경과조치) ① 1999학년도 법학부, 2000 ~ 2001학년도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2002 ~ 2004학년도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법학전공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 2004학년도 후기졸업(2005.8.19)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졸업 및 성적증명서상에 법과대학 법학과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이 학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급되는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현행대로 발급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 10.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학칙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학칙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5.)

이 학칙은 2006. 5.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25.)

이 학칙은 2006.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 6. 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설된 연구소는 부설연구소로 승인 받은 일자에 설립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9.20.)

이 학칙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20.)

이 학칙은 2006. 10.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7.)

제1조(경과조치) ① 2006학년도 이전에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인문학부(서양학부,외국어문학부) 독어독문학 전공(과)에 입학한 자가, 휴학(제적)후 2007학년도 이후에 입학한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때,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동일학부로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 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2006학년도 이전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생활음악과 뮤지컬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휴학(제적)후 2007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때,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 서울캠퍼스 예술조형대학 공연영화학부 뮤지컬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단, 서울캠퍼스로 소속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천안캠퍼스 내에서 의치과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 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47조 제6항의 공인영어성적 졸업인증제는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7.)

이 학칙은 2007. 3. 1. 부터 시행하되, 제9조 제3호 의학레이저의료기기연구센터의 명칭은 2007. 2.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4.19.)

이 학칙은 2007. 4. 19. 부터 시행하되, 제37조 제1항은 2007.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5.9.)

제1조(적용) 이 학칙 제2조 및 제3조(별표1)의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 5.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4.)

이 학칙은 2007. 6.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22.)

이 학칙은 2007. 10. 22.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제1조(경과조치) ① 제47조 제1항은 200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03학년도 이전 신입학자와 200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2007학년도 및 2008학년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졸업예정자에 한해 별지 서식 1의 학위증에 OO공학 공학사(해당 시 심화과정 표시)로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2008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휴, 복학 등으로 학과(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학위(전공)명은 졸업 당시 학생의 소속 학과(전공)명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학과(전공)명을 적용할 수 있다.

④ 2007학년도 이전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무용학과에 입학한 자가, 휴학(제적)후 2008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때,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 죽전캠퍼스 예술조형대학 무용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단, 죽전캠퍼스로 소속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천안캠퍼스 내에서 의·치과 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 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2008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2008. 3. 1일 현재 죽전캠퍼스 야간강좌 모집단위 재적생은 입학년도 주간강좌 동일 모집단위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입학당시의 학적 유지를 전제로 하는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야간강좌 모집단위 소속으로 졸업할 수 있다. 본 경과조치에 의하여 학적이 변동된 경우 주간강좌 모집단위에서의 주전공은 입학당시의 모집단위 안에 설치된 전공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⑥ 야간강좌는 2010학년도까지 개설되며, 휴학생이 복학(재수복학)하는 경우에 동일학년 동일전공의 야간강좌가 없으면 주간강좌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소속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야간강좌를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⑦ 야간강좌의 제적생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 주간강좌의 동일 전공으로만 재입학을 허가한다.

⑧ 2007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정보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휴학(제적)후 2008학년도 이후에 복학(재입학)시 동일 학년의 동일 전공이 없으면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또는 공과대학 컴퓨터학부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개정학칙 제3조 (별표1)의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학칙 제29조 제1항, 제37조 제1항은 2008.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9.10.)

이 학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 10. 31.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제28조의 3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정보·컴퓨터학부 신입학자 중 컴퓨터과학 전공자는 공과대학 컴퓨터학부 공학전문교육과정 또는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제5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정보·컴퓨터학부 신입학자 중 컴퓨터과학 전공자의 학위는 별표3의 공과대학 컴퓨터학부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제50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2007학년도 이전 신입학자의 소속 학과(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 학칙에 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2004학년도 및 2005학년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신입학자가 2008학년도에 졸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기공학 전문공학사, 전자공학 전문공학사, 컴퓨터공학 전문공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④ 제50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공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의 경우, 소속에 전공명을 병기할 수 있다.

부칙(2009.1.20.)

이 학칙은 2009.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7조 및 제47조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학칙 제10조는 200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제12조는 2009학년도 2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7.27.)

이 학칙은 2009. 7.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 8. 3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조의2 (별표1)의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0.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 10.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2조제3항은 2010. 3. 1.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에 천안캠퍼스 법정대학 법학과(법학전공 포함)에 입학한 자가, 휴학(제적)후 2010학년도 이후에 입학한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때,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 죽전캠

퍼스 법과대학 법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단, 죽전캠퍼스로 소속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천안캠퍼스 내에서 의·치과대학을 제외한 타 학과(전공)로 전부(과)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0.2.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 2.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10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건축대학 신입학자의 전부(과)는 구 학칙과 건축대학 내규로 정한다.

부칙(2010.5.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제91조의 변경내용은 직제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7.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28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입학 당시의 소속이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학부(과)·전공의 폐지 및 명칭변경이 된 경우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학부(과)·전공의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 학칙 제50조제4항은 2011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부터 적용하고, 2011학년도 신입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이를 허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편입생부터는 건축학교육인증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③ 건축대학 건축학과(4년제)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재입학)한 경우는 구 규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2010.1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 10.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3조 및 제3조의 2(별표 1)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67조의 2는 2011. 3. 1.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2. 28.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입학 당시의 소속이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학부(과)·전공의 폐지 및 명칭변경이 된 경우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학부(과)·전공의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2011.2.24.)

이 학칙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 6. 1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47조제10항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8.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 8.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3조 및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공과대학 모바일커뮤니케이션공학과로 입학한 자는 국제학부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으로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2011.11.18. 개정>

② 이 개정 학칙 제50조 [별표 2] 및 [별표 3]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11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2월28일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입학 당시의 소속이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학부(과)·전공의 폐지 또는 명칭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과)·전공의 학위를 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1.9.26.)

이 학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11.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단위 전공 구분표 중 2012학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012.5.1. 개정>

② 이 개정 학칙 제50조 [별표2] 및 [별표3]은 2012학년도 신입부터 적용하되, 2012학년도 신입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3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학부,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2.5.1. 개정>

부칙(2012.1.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학칙 제90조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이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은 2012. 2.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50조 [별표 2]는 2012학년도 신입부터 적용하되, 2012학년도 신입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부칙(2012.5.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2조제3항은 2013. 3. 1.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학칙 제13조제4항제3호는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미등록 또는 미복교 제적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12.7.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7. 2.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8.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8.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9.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9.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47조제1항제6호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11.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은 2012. 10. 10.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50조는 2012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1.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67조의2의 신설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 2.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19조제2항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31조제4항은 2013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제47조 및 제50조 별표2 및 별표 3은 2013학년도 신입부터 적용하되, 2013학년도 신입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에 의거 수강신청학점을 인정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졸업학점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014.4.25. 개정>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 4.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변경 승인 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8.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4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학부,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10.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12.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21조 제1항 및 제35조 제3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50조 [별표2] 및 [별표3]은 2014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14학년도 신입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50조 [별표2] 및 [별표3]은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4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 하는 연도 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 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학부,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4.2.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2.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5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 소속 학부(과), 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학부,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4.4.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4.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5조제4항, 제47조제7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1.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11.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2조제4항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26.) <부칙개정 2025.5.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12.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13조제2항제1호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2.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6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학부,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4.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 [별표2]와 [별표3]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19조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 11.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제19조 제3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 개정 내용 중 현행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법무행정학과의 학위 명칭은 개정 학칙 시행 일로부터 2013학년도 이전 구 학칙 상 ‘법학사(Bachelor of Laws)’ 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2.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2.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47조 제1항 제5호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7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7.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2.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47조제7항에 추가된 공인외국어의 졸업인증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47조 제7항의 인정기준 중 폐지되는 해외연수 및 해외학술탐방은 2016년 2월 말까지의 실적만 인정한다.

부칙(2017.7.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3항 제1호의 ‘다산링크스쿨’ 은 2017.5.12.부터 시행하고, ‘S W융합대학’ 은 20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1조 제4항, 제35조 제5항, 제47조 제1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8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7.1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1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6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의2 및 제35조제6항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1.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47조 제10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6.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6.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11.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5.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20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보건복지대학(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의과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11.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47조 제5항은 2020학년도 신입학자(2022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2.28.)

이 학칙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1.)

이 학칙은 2022.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2.)

이 학칙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46조는 2020학년도 신입학자(2022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3.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3.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4.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4.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조의2 [별표1-1]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단위 전공 구분표는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4.23.)

이 학칙은 2021.4.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6.2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0조의2 제2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7.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7.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31조제5항 및 제37조의2제5항부터 제6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2]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0.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10.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2조제7항은 2021.7.1.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19조제3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제27조제1호, 제2호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12.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12조제1항의 의학과, 치의학과 정원내 일반편입학은 2022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제13조제3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이 학칙 제3조의2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3.28.>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12조제5항의 3년제 전문대학 의료인력 양성 관련 학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2018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2.3.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3.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19조제1항의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2.3.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3.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1] 바이오헬스융합학부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 내역 및 [별표1-1]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단위 전공 구분표 조정 내역은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5.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5.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2조제3항4호는 2022.4.1.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1] SW융합대학 SW융합학부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1] 공공보건과학대학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전공은 2022.5.13.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은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0.14.)

이 학칙은 2022.10.1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2.16.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8.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제37조제3항제8호 및 제6항, 제45조제3항의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제3조의2 [별표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 내역 및 [별표1-1]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단위 전공 구분표 조정 내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2.29.)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4.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별표 2] 학과(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은 2023학년도 2학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4.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프리무스국제대학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 내역 및 [별표1-1]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단위 전공 구분표 조정 내역은 202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는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3389, 3407(2024.04.22.)’에 의거 2025학년도에 한하여 입학정원 120명 중 80명을 모집인원으로 한다.

부칙(2024.11.13.)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4.11.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개정 학칙 제46조제5항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47조제10항에서 2025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이전 소속에서도 적용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47조제7항의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 학칙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요구학점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부칙(2025.2.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2.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5.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25년 봄 졸업부터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및 융합반도체공학전공 학위명은 각각 이 개정 학칙 제50조제1항 [별표2]의 전자전기공학과 및 융합반도체공학과 학위명을 따른다.

②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 내역은 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는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1702(2025.04.28.)’에 의거 2026학년도에 한하여 입학정원 120명 중 40명을 모집인원으로 한다.

제3조(부칙의 개정) 부칙(2014.12.26.) 제2조 중 “1학기” 를 삭제하고 “입학자” 로 한다.

부칙(2025.7.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7.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제50조제4항의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전부(과)에 대한 특례) 제19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2학기에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특별전형으로 공연영화학부에 입학한 자의 경우 연기영상예술학과로의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2025.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9.2.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과대학 유급에 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1학기에 의과대학에서 유급된 자에 한하여 학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 적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제19조제3항제1호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37조제6항 및 제45조제3항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이 개정 학칙 제50조제1항 별지 서식1-2 영문학위증은 2026년 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2.26.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5.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학칙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4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50조제1항 [별표 2] 학과(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의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위명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개정 학칙 제50조제1항 [별표 2] 학과(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에서 교육편제가 조정된 종전 학과(전공)의 학위명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개정 2011.8.5., 2011.11.10., 2012.7.2., 2012.8.31., 2013.8.1., 2013.10.17., 2014.2.21., 2015.2.26., 2016.2.26., 2016.03.25., 2017.7.26., 2018.11.19., 2019.5.1., 2020.2.28., 2020.4.1., 2021.12.31., 2022.3.31., 2022.5.18., 2022.08.18., 2022.10.14., 2023.8.16., 2024.4.30., 2025.5.28., 2026.2.26., 2026.5.7.>

◎ 2023~2026학년도

대학	2026학년도		대학	2025학년도		대학	2024학년도		대학	2023학년도	
	학부(전공), 학과	입학정원		학부(전공), 학과	입학정원		학부(전공), 학과	입학정원		학부(전공), 학과	입학정원
퇴계혁신칼리지		256	퇴계혁신칼리지		267						
문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국문학과 32</li> <li>사학과 32</li> <li>철학과 20</li> <li>영미인문학과 30</li> </ul>		문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국문학과 32</li> <li>사학과 32</li> <li>철학과 20</li> <li>영미인문학과 30</li> </ul>		문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국문학과 50</li> <li>사학과 50</li> <li>철학과 20</li> <li>영미인문학과 32</li> </ul>		문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국문학과 55</li> <li>사학과 55</li> <li>철학과 20</li> <li>영미인문학과 35</li> </ul>	
인문계열광역		38	인문계열광역		38						
법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학과 63</li> </ul>		법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학과 63</li> </ul>		법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학과 115</li> </ul>		법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학과 115</li> </ul>	
사회과학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외교학과 30</li> <li>행정학과 31</li> <li>도시계획부동산학부 38</li> <li>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41</li> <li>상담학과 30</li> </ul>		사회과학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외교학과 30</li> <li>행정학과 31</li> <li>도시계획부동산학부 38</li> <li>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41</li> <li>상담학과 30</li> </ul>		사회과학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외교학과 33</li> <li>행정학과 42</li> <li>도시계획부동산학부 70</li> <li>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75</li> <li>상담학과 30</li> </ul>		사회과학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외교학과 35</li> <li>행정학과 45</li> <li>도시계획부동산학부 70</li> <li>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75</li> <li>상담학과 30</li> </ul>	
경영경제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학과 43</li> <li>무역학과 43</li> <li>경영학부 123</li> <li>산업경영학과(야) {3}</li> </ul>		경영경제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학과 43</li> <li>무역학과 43</li> <li>경영학부 123</li> <li>산업경영학과(야) {3}</li> </ul>		경영경제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학과 67</li> <li>무역학과 67</li> <li>경영학부 225</li> <li>산업경영학과(야) {3}</li> <li>글로벌경영학과 40</li> </ul>		경영경제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학과 70</li> <li>무역학과 70</li> <li>경영학부 215</li> <li>산업경영학과(야) {3}</li> <li>국제학부 20</li> <li>국제경영학전공 (20)</li> </ul>	
사회계열광역		148	사회계열광역		148						
공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전기공학과 57</li> <li>융합반도체공학과 44</li> <li>고분자시스템공학부 70</li> <li>고분자공학전공 (39)</li> <li>융합소재공학전공 (31)</li> <li>인프라건설공학과 52</li> <li>기계공학과 43</li> <li>화학공학과 59</li> <li>건축학부 82</li> <li>건축학전공(5년제) (50)</li> <li>건축공학전공 (32)</li> </ul>		공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전기공학과 57</li> <li>융합반도체공학과 44</li> <li>고분자시스템공학부 70</li> <li>고분자공학전공 (39)</li> <li>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 (31)</li> <li>토목환경공학과 52</li> <li>기계공학과 43</li> <li>화학공학과 59</li> <li>건축학부 82</li> <li>건축학전공(5년제) (50)</li> <li>건축공학전공 (32)</li> </ul>		공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전기공학과 105</li> <li>융합반도체공학과 80</li> <li>고분자시스템공학부 95</li> <li>고분자공학전공 (57)</li> <li>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 (38)</li> <li>토목환경공학과 81</li> <li>기계공학과 66</li> <li>화학공학과 92</li> <li>건축학부 100</li> <li>건축학전공(5년제) (50)</li> <li>건축공학전공 (50)</li> </ul>		공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전기공학부 185</li> <li>전자전기공학전공 (105)</li> <li>융합반도체공학전공 (80)</li> <li>고분자시스템공학부 100</li> <li>고분자공학전공 (60)</li> <li>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 (40)</li> <li>토목환경공학과 85</li> <li>기계공학과 70</li> <li>화학공학과 95</li> <li>건축학부 100</li> <li>건축학전공(5년제) (50)</li> <li>건축공학전공 (50)</li> </ul>	
공학계열광역		108	공학계열광역		108						
AI융합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프트웨어학과 30</li> <li>컴퓨터공학과 30</li> <li>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30</li> <li>사이버보안학과 30</li> <li>인공지능학과 42</li> <li>SW융합학부</li> </ul>		S W 융합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프트웨어학과 47</li> <li>컴퓨터공학과 32</li> <li>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30</li> <li>사이버보안학과 30</li> <li>SW융합학부</li> </ul>		S W 융합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프트웨어학과 87</li> <li>컴퓨터공학과 50</li> <li>모바일시스템공학과 30</li> <li>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35</li> <li>사이버보안학과 30</li> <li>SW융합학부</li> </ul>		S W 융합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프트웨어학과 87</li> <li>컴퓨터공학과 50</li> <li>모바일시스템공학과 30</li> <li>정보통계학과 35</li> <li>산업보안학과 30</li> <li>SW융합학부</li> </ul>	
S W 융합계열광역		34	S W 융합계열광역		34						
사범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문교육과 25</li> <li>특수교육과 40</li> <li>수학교육과 30</li> <li>과학교육과 30</li> <li>체육교육과 40</li> </ul>		사범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문교육과 25</li> <li>특수교육과 40</li> <li>수학교육과 30</li> <li>과학교육과 30</li> <li>체육교육과 40</li> </ul>		사범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문교육과 25</li> <li>특수교육과 40</li> <li>수학교육과 30</li> <li>과학교육과 30</li> <li>체육교육과 40</li> </ul>		사범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문교육과 25</li> <li>특수교육과 40</li> <li>수학교육과 30</li> <li>과학교육과 30</li> <li>체육교육과 40</li> </ul>	
음악예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예과 31</li> <li>디자인학부 87</li> <li>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50)</li> <li>패션산업디자인전공 (37)</li> <li>공연영화학부 75</li> <li>연극전공 (31)</li> <li>영화전공 (22)</li> <li>뮤지컬전공 (22)</li> <li>무용과 40</li> <li>음악학부 107</li> <li>피아노전공 (18)</li> <li>관현악전공 (34)</li> <li>성악전공 (19)</li> <li>작곡전공 (7)</li> <li>국악전공 (29)</li> </ul>		음악예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예과 31</li> <li>디자인학부 87</li> <li>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50)</li> <li>패션산업디자인전공 (37)</li> <li>공연영화학부 75</li> <li>연극전공 (31)</li> <li>영화전공 (22)</li> <li>뮤지컬전공 (22)</li> <li>무용과 40</li> <li>음악학부 107</li> <li>피아노전공 (18)</li> <li>관현악전공 (34)</li> <li>성악전공 (19)</li> <li>작곡전공 (7)</li> <li>국악전공 (29)</li> </ul>		음악예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예과 31</li> <li>디자인학부 87</li> <li>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50)</li> <li>패션산업디자인전공 (37)</li> <li>공연영화학부 75</li> <li>연극전공 (31)</li> <li>영화전공 (22)</li> <li>뮤지컬전공 (22)</li> <li>무용과 40</li> <li>음악학부 107</li> <li>피아노전공 (18)</li> <li>관현악전공 (34)</li> <li>성악전공 (19)</li> <li>작곡전공 (7)</li> <li>국악전공 (29)</li> </ul>		음악예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예과 35</li> <li>디자인학부 80</li> <li>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50)</li> <li>패션산업디자인전공 (30)</li> <li>공연영화학부 63</li> <li>무용과 40</li> <li>음악학부 112</li> <li>피아노전공 (19)</li> <li>관현악전공 (35)</li> <li>성악전공 (20)</li> <li>작곡전공 (8)</li> <li>국악전공 (30)</li> </ul>	
프리무스국제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경영학과 40</li> <li>모바일시스템공학과 30</li> <li>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li> <li>한국학과</li> <li>연기영상예술학과</li> <li>글로벌기초교육학부</li> </ul>		프리무스국제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경영학과 40</li> <li>모바일시스템공학과 30</li> <li>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li> <li>한국학과</li> <li>연기영상예술학과</li> <li>글로벌기초교육학부</li> </ul>		프리무스국제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li> <li>한국학과</li> <li>연기영상예술학과</li> <li>글로벌기초교육학부</li> </ul>		프리무스국제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li> <li>한국학과</li> <li>연기영상예술학과</li> <li>글로벌기초교육학부</li> </ul>	
죽전캠퍼스	소계	2,287 {3}	죽전캠퍼스	소계	2,275 {3}	죽전캠퍼스	소계	2,275 {3}	죽전캠퍼스	소계	2,275 {3}

대학	2026학년도		대학	2025학년도		대학	2024학년도		대학	2023학년도	
	학부(전공), 학과	입학정원		학부(전공), 학과	입학정원		학부(전공), 학과	입학정원		학부(전공), 학과	입학정원
울 곡 혁 신 칼 리 지			173	울 곡 혁 신 칼 리 지			173	울 곡 혁 신 칼 리 지			173
외국어 대학	■ 아시아중등학부	148	외국어 대학	■ 아시아중등학부	148	외국어 대학	■ 아시아중등학부	205	외국어 대학	■ 아시아중등학부	210
	- 중국학전공	(36)		- 중국학전공	(36)		- 중국학전공	(67)		- 중국학전공	(70)
	- 일본학전공	(32)		- 일본학전공	(32)		- 일본학전공	(58)		- 일본학전공	(60)
	- 몽골학전공	(30)		- 몽골학전공	(30)		- 몽골학전공	(30)		- 몽골학전공	(30)
	- 중등학전공	(30)		- 중등학전공	(30)		- 중등학전공	(30)		- 중등학전공	(30)
	- 베트남학전공	(20)		- 베트남학전공	(20)		- 베트남학전공	(20)		- 베트남학전공	(20)
	■ 유럽중남미학부	115		■ 유럽중남미학부	115		■ 유럽중남미학부	120		■ 유럽중남미학부	130
	- 독일학전공	(19)		- 독일학전공	(19)		- 독일학전공	(19)		- 독일학전공	(20)
	- 프랑스학전공	(19)		- 프랑스학전공	(19)		- 프랑스학전공	(19)		- 프랑스학전공	(20)
	- 스페인중남미학전공	(31)		- 스페인중남미학전공	(31)		- 스페인중남미학전공	(36)		- 스페인중남미학전공	(40)
- 러시아학전공	(26)	- 러시아학전공	(26)	- 러시아학전공	(26)	- 러시아학전공	(30)				
-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20)	-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20)	-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20)	-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20)				
○ 영어과	33	○ 영어과	33	○ 영어과	56	○ 영어과	60				
○ 글로벌한국어과	10	○ 글로벌한국어과	10	○ 글로벌한국어과	10	○ 글로벌한국어과	10				
공공정책학과(야)	○ 공공정책학과(야)	31	공공정책학과(야)	○ 공공정책학과(야)	31	공공정책학과(야)	○ 공공정책학과(야)	40	공공정책학과(야)	○ 공공정책학과(야)	40
	○ 사회복지학과	32		○ 사회복지학과	32		○ 사회복지학과	32		○ 사회복지학과	30
	○ 해병대군사학과	30		○ 해병대군사학과	30		○ 해병대군사학과	30		○ 해병대군사학과	30
	○ 식품자원경제학과	33		○ 식품자원경제학과	33		○ 식품자원경제학과	33		○ 식품자원경제학과	30
	○ 식품안전학과	33		○ 식품안전학과	33		○ 식품안전학과	33		○ 식품안전학과	30
인문사회계열광역			107	인문사회계열광역			107	인문사회계열광역			107
과학기술 대학	○ 수학과	32	과학기술 대학	○ 수학과	32	과학기술 대학	○ 수학과	46	과학기술 대학	○ 수학과	50
	○ 물리학과	31		○ 물리학과	31		○ 물리학과	40		○ 물리학과	45
	○ 화학과	32		○ 화학과	31		○ 화학과	54		○ 화학과	60
	○ 식품영양학과	32		○ 식품영양학과	32		○ 식품영양학과	46		○ 식품영양학과	50
	○ 신소재공학과	32		○ 신소재공학과	32		○ 신소재공학과	55		○ 신소재공학과	55
○ 에너지공학과	41	○ 에너지공학과	41	○ 에너지공학과	74	○ 에너지공학과	60				
○ 경영공학과	31	○ 경영공학과	31	○ 경영공학과	45	○ 경영공학과	80				
○ 제약공학과	31	○ 제약공학과	31	○ 제약공학과	45	○ 제약공학과	50				
바이오 융합 대학	■ 생명공학부	128	바이오 융합 대학	■ 생명공학부	128	바이오 융합 대학	■ 생명공학부	199	생명 공학 대학	■ 생명공학부	100
	- 식량생명공학전공	(32)		- 식량생명공학전공	(32)		- 식량생명공학전공	(50)		- 식량생명공학전공	(50)
	- 동물생명공학전공	(32)		- 동물생명공학전공	(32)		- 동물생명공학전공	(49)		- 동물생명공학전공	(50)
	- 환경원예학전공	(32)		- 환경원예학전공	(32)		- 환경원예학전공	(50)		- 환경원예학전공	(50)
	- 녹지조경학전공	(32)		- 녹지조경학전공	(32)		- 녹지조경학전공	(50)		- 녹지조경학전공	(50)
	○ 의생명과학부	100		○ 의생명과학부	100		○ 의생명과학부	155		○ 의생명과학부	45
	- 의생명시스템학전공	(31)		- 의생명시스템학전공	(31)		- 의생명시스템학전공	(40)		- 의생명시스템학전공	(45)
	- 생명과학전공	(38)		- 생명과학전공	(38)		- 생명과학전공	(70)		- 생명과학전공	(45)
	- 미생물학전공	(31)		- 미생물학전공	(31)		- 미생물학전공	(45)		- 미생물학전공	(45)
	○ 식품공학과	33		○ 식품공학과	33		○ 식품공학과	56		○ 식품공학과	(45)
○ 코스메디컬소재학과	20	○ 코스메디컬소재학과	20	○ 코스메디컬소재학과	20	○ 코스메디컬소재학과	40				
자연공학계열광역			166	자연공학계열광역			166	자연공학계열광역			166
예술 대학	■ 미술학부	126	예술 대학	■ 미술학부	126	예술 대학	■ 미술학부	126	예술 대학	■ 미술학부	133
	- 공예전공	(39)		- 공예전공	(39)		- 공예전공	(39)		- 공예전공	(39)
	- 동양화전공	(35)		- 동양화전공	(35)		- 동양화전공	(35)		- 동양화전공	(35)
	- 서양화전공	(33)		- 서양화전공	(33)		- 서양화전공	(33)		- 서양화전공	(33)
	- 조소전공	(19)		- 조소전공	(19)		- 조소전공	(19)		- 조소전공	(19)
	○ 문예창작과	50		○ 문예창작과	50		○ 문예창작과	50		○ 문예창작과	50
	■ 뉴뮤직학부	80		■ 뉴뮤직학부	80		■ 뉴뮤직학부	80		■ 뉴뮤직학부	80
	- 뮤직테크놀러지전공	(20)		- 뮤직테크놀러지전공	(20)		- 뮤직테크놀러지전공	(20)		- 뮤직테크놀러지전공	(20)
	- 재즈퍼포먼스전공	(30)		- 재즈퍼포먼스전공	(30)		- 재즈퍼포먼스전공	(30)		- 재즈퍼포먼스전공	(30)
	- 싱어송라이팅전공	(30)		- 싱어송라이팅전공	(30)		- 싱어송라이팅전공	(30)		- 싱어송라이팅전공	(30)
스포츠 과학 대학	○ 생활체육학과	34	스포츠 과학 대학	○ 생활체육학과	34	스포츠 과학 대학	○ 생활체육학과	34	스포츠 과학 대학	○ 생활체육학과	35
	○ 스포츠경영학과	37		○ 스포츠경영학과	37		○ 스포츠경영학과	37		○ 스포츠경영학과	40
	■ 국제스포츠학부	89		■ 국제스포츠학부	89		■ 국제스포츠학부	89		■ 국제스포츠학부	95
	- 운동처방재활전공	(18)		- 운동처방재활전공	(18)		- 운동처방재활전공	(18)		- 운동처방재활전공	(20)
	- 국제스포츠전공	(48)		- 국제스포츠전공	(48)		- 국제스포츠전공	(48)		- 국제스포츠전공	(55)
	- 태권도전공	(18)		- 태권도전공	(18)		- 태권도전공	(18)		- 태권도전공	(20)
- 골프전공	(5)	- 골프전공	(5)	- 골프전공	(5)	- 골프전공	(5)				
의과 대학	○ 의예과(의학과)	120	의과 대학	○ 의예과(의학과)	120	의과 대학	○ 의예과(의학과)	40	의과 대학	○ 의예과(의학과)	40
	○ 의예과(의학과)	120		○ 의예과(의학과)	120		○ 의예과(의학과)	40		○ 의예과(의학과)	40
보건 과학 대학	○ 임상병리학과	40	보건 과학 대학	○ 임상병리학과	40	보건 과학 대학	○ 임상병리학과	40	공공 보건 과학 대학	○ 공공정책학과	45
	○ 물리치료학과	40		○ 물리치료학과	40		○ 물리치료학과	40		○ 물리치료학과	40
	○ 보건행정학과	31		○ 보건행정학과	31		○ 보건행정학과	40		○ 보건행정학과	40
	○ 치위생학과	40		○ 치위생학과	40		○ 치위생학과	40		○ 치위생학과	40
	○ 심리학과	31		○ 심리치료학과	31		○ 심리치료학과	40		○ 심리치료학과	40
간호 대학	○ 간호학과	112	간호 대학	○ 간호학과	112	간호 대학	○ 간호학과	112	간호 대학	○ 간호학과	112
	○ 치의예과(치의학과)	70		○ 치의예과(치의학과)	70		○ 치의예과(치의학과)	70		○ 치의예과(치의학과)	70
	○ 약학과	30		○ 약학과	30		○ 약학과	30		○ 약학과	30
	○ 약학과	30		○ 약학과	30		○ 약학과	30		○ 약학과	30
	○ 약학과	30		○ 약학과	30		○ 약학과	30		○ 약학과	30

천안 캠퍼스	소 계	2,391 {40}	천안 캠퍼스	소 계	2,391 {40}	천안 캠퍼스	소 계	2,311 {40}	천안 캠퍼스	소 계	2,355 {40}
죽전/ 천안	총 계	4,678 {43}	죽전/ 천안	총 계	4,666 {43}	죽전/ 천안	총 계	4,586 {43}	죽전/ 천안	총 계	4,630 {43}

※ { } : 야간정원, 정원 총계는 야간정원을 포함

※ ( ) : 학부 내 전공별 입학정원

※ 학부 교육과정 운영단위 전공은 별표 1-1 참조

※ SW융합대학 SW융합학부, 공공보건과학대학 바이오헬스융합학부는 재학생을 선발대상으로 하므로 입학정원 없음

※ 프리무스국제대학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한국학과, 연기영상예술학과, 글로벌기초교육학부는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입학정원 없음

※ 광역모집 유형별 선택 가능 학부(전공), 학과

캠퍼스	광역모집 유형	학부(전공), 학과
죽전	퇴계혁신칼리지	죽전캠퍼스 전 학부(전공), 학과 (단, 사범대학, 음악·예술대학, 프리무스국제대학, 산업경영학과(야), 건축학전공(5년제), SW융합학부, 인공지능학과 제외)
	인문계열광역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사회계열광역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담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부
	공학계열광역	전자전기공학과, 융합반도체공학과, 고분자시스템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전공
	SW융합계열광역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천안	율곡혁신칼리지	천안캠퍼스 전 학부(전공), 학과 (단,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공공정책학과(야), 해병대군사학과, 코스메디컬소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제외)
	인문사회계열광역	아시아중동학부, 유럽중남미학부, 영어과, 글로벌한국어과, 공공정책학과, 사회복지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보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자연공학계열광역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공학과, 경영공학과, 제약공학과, 생명자원학부, 의생명과학부, 식품공학과

◎ 2027학년도

<죽전캠퍼스>

대학	2027학년도	
	학부(전공), 학과	입학정원
퇴계혁신칼리지(광역)		246
문과대학	○ 국어국문학과	32
	○ 사학과	32
	○ 철학과	20
	○ 영미인문학과	30
퇴계혁신칼리지(인문계열광역)		38
법과대학	○ 법학과	63
사회과학 대학	○ 정치외교학과	30
	○ 행정학과	31
	■ 도시계획·부동산학부	38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41
	○ 상담학과	30
경영경제 대학	○ 경제학과	43
	○ 무역학과	43
	■ 경영학부	123
	○ 산업경영학과(야)	{3}
퇴계혁신칼리지(사회계열광역)		148
공과대학	○ 전자전기공학과	57
	○ 융합반도체공학과	44
	■ 고분자시스템공학부	70
	- 고분자공학전공	(39)
	- 융합소재공학전공	(31)
	○ 인프라건설공학과	52
	○ 기계공학과	43
	○ 화학공학과	59
	■ 건축학부	72
	- 건축학전공(5년제)	(42)
	- 건축공학전공	(30)
퇴계혁신칼리지(공학계열광역)		108
AI융합 대학	○ 소프트웨어학과	30
	○ 컴퓨터공학과	30
	○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30
	○ 사이버보안학과	30
	○ 인공지능학과	42
	○ AI건축융합학과	20
	■ SW융합학부	
퇴계혁신칼리지(SW융합계열광역)		34
사범대학	○ 한문교육과	25
	○ 특수교육과	40
	○ 수학교육과	30
	○ 과학교육과	30
	○ 체육교육과	40
음악·예술 대학	○ 도예과	31
	■ 디자인학부	87
	-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50)
	- 패션산업디자인전공	(37)
	■ 공연영화학부	75
	- 연극전공	(31)
	- 영화전공	(22)
	- 뮤지컬전공	(22)

<천안캠퍼스>

대학	2027학년도	
	학부(전공), 학과	입학정원
울곡혁신칼리지(광역)		173
외국어 대학	■ 아시아중동학부	148
	- 중국학전공	(36)
	- 일본학전공	(32)
	- 몽골학전공	(30)
	- 중동학전공	(30)
	- 베트남학전공	(20)
	■ 유럽중남미학부	115
	- 독일학전공	(19)
	- 프랑스학전공	(19)
	- 스페인중남미학전공	(31)
	- 러시아학전공	(26)
	-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20)
	○ 영어과	33
	○ 글로벌한국어과	10
공공인재 대학	○ 공공정책학과	31
	○ 공공정책학과(야)	{40}
	○ 사회복지학과	32
	○ 해병대군사학과	30
	○ 식품자원경제학과	33
울곡혁신칼리지(인문사회계열광역)		107
과학기술 대학	○ 수학과	32
	○ 물리학과	31
	○ 화학과	32
	○ 식품영양학과	32
	○ 신소재공학과	32
	○ 에너지공학과	41
	○ 경영공학과	31
	○ 제약공학과	31
	○ 의생명공학부	128
- 식량생명공학전공	(32)	
- 동물생명공학전공	(32)	
- 환경원예학전공	(32)	
- 녹지조경학전공	(32)	
■ 의생명과학부	100	
- 의생명시스템학전공	(31)	
- 생명과학전공	(38)	
- 미생물학전공	(31)	
○ 식품공학과	33	
○ 코스메디컬소재학과	20	
울곡혁신칼리지(자연공학계열광역)		166
예술대학	■ 미술학부	126
	- 공예전공	(39)
	- 동양화전공	(35)
	- 서양화전공	(33)
	- 조소전공	(19)
	○ 문예창작과	50
	■ 뉴뮤직학부	80
	- 뮤직테크놀로지전공	(20)
	- 재즈퍼포먼스전공	(30)
	- 싱어송라이팅전공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과</li> <li>■ 음악학부</li> <li>- 피아노전공 (18)</li> <li>- 관현악전공 (34)</li> <li>- 성악전공 (19)</li> <li>- 작곡전공 (7)</li> <li>- 국악전공 (29)</li> </ul>	<p>40</p> <p>107</p> <p>(18)</p> <p>(34)</p> <p>(19)</p> <p>(7)</p> <p>(29)</p>
프리무스 국제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경영학과</li> <li>○ 모바일시스템공학과</li> <li>○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li> <li>○ 한국학과</li> <li>○ 연기영상예술학과</li> <li>■ 글로벌기초교육학부</li> </ul>	<p>40</p> <p>30</p>
죽전캠퍼스	소 계	2,287{3}

스포츠 과학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육학과</li> <li>○ 스포츠경영학과</li> <li>■ 국제스포츠학부</li> <li>- 운동처방제활전공 (19)</li> <li>- 국제스포츠전공 (51)</li> <li>- 태권도전공 (19)</li> </ul>	<p>34</p> <p>37</p> <p>89</p> <p>(19)</p> <p>(51)</p> <p>(19)</p>
의과대학	○ 의예과(의학과)	55
보건과학 대학	○ 임상병리학과	40
	○ 물리치료학과	40
	○ 보건행정학과	31
	○ 치위생학과	40
	○ 심리학과	31
간호대학	○ 간호학과	112
치과대학	○ 치의예과(치의학과)	70
약학대학	○ 약학과	30
천안캠퍼스	소 계	2,326{40}

죽전/천안	총 계	4,613{43}
-------	-----	-----------

- ※ { } : 야간정원, 정원 총계는 야간정원을 포함
- ※ ( ) : 학부 내 전공별 입학정원
- ※ 학부 교육과정 운영단위 전공은 별표 1-1 참조
- ※ AI융합대학 SW융합학부는 재학생을 선발대상으로 하므로 입학정원 없음
- ※ 프리무스국제대학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한국학과, 연기영상예술학과, 글로벌기초교육학부는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입학정원 없음
- ※ 광역모집 유형별 선택 가능 학부(전공), 학과

캠퍼스	광역모집 유형	학부(전공), 학과
죽전	퇴계혁신칼리지 (광역)	죽전캠퍼스 전 학부(전공), 학과 (단, 사범대학, 음악·예술대학, 프리무스국제대학, 산업경영학과(야), 건축학전공(5년제), SW융합학부, 인공지능학과, AI건축융합학과 제외)
	퇴계혁신칼리지 (인문계열광역)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퇴계혁신칼리지 (사회계열광역)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담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부
	퇴계혁신칼리지 (공학계열광역)	전자전기공학과, 융합반도체공학과, 고분자시스템공학부, 인프라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전공
	퇴계혁신칼리지 (SW융합계열광역)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천안	울곡혁신칼리지 (광역)	천안캠퍼스 전 학부(전공), 학과 (단,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공공정책학과(야), 해병대군사학과, 코스메디컬소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제외)
	울곡혁신칼리지 (인문사회계열광역)	아시아중동학부, 유럽중남미학부, 영어과, 글로벌한국어과, 공공정책학과, 사회복지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보건행정학과, 심리학과
	울곡혁신칼리지 (자연공학계열광역)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공학과, 경영공학과, 제약공학과, 생명공학부, 의생명과학부, 식품공학과

[별표 1-1]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단위 구분표

<개정 2010.5.26., 2010.10.8., 2011.11.10., 2012.7.2., 2013.8.1., 2014.2.21., 2015.2.26., 2017.01.02., 2017.7.26., 2018.11.19., 2019.5.1., 2020.02.28., 2021.4.5., 2021.12.31., 2022.3.31., 2022.5.18., 2023.8.16., 2024.4.30., 2026.2.26.>

◎ 2022~2025학년도

	대학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학부/(전공)	학부/(전공)	학부/(전공)	학부/(전공)
죽전	사회과학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부동산학부 (도시지역계획학전공) (부동산학전공)</li> <li>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저널리즘전공) (영상콘텐츠전공) (광고홍보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부동산학부 (도시지역계획학전공) (부동산학전공)</li> <li>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저널리즘전공) (영상콘텐츠전공) (광고홍보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부동산학부 (도시지역계획학전공) (부동산학전공)</li> <li>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저널리즘전공) (영상콘텐츠전공) (광고홍보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부동산학부 (도시지역계획학전공) (부동산학전공)</li> <li>커뮤니케이션학부 (저널리즘전공) (영상콘텐츠전공) (광고홍보전공)</li> </ul>
	경영경제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li> <li>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li> <li>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li> </ul>
	공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li> <li>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li> <li>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융합반도체공학전공)</li> <li>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li> <li>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융합반도체공학전공)</li> <li>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li> <li>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li> </ul>
	SW융합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융합학부 (SW융합바이오전공) (SW융합콘텐츠전공) (SW융합경제경영전공) (SW융합법학전공) (글로벌SW융합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융합학부 (SW융합바이오전공) (SW융합콘텐츠전공) (SW융합경제경영전공) (SW융합법학전공) (글로벌SW융합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융합학부 (SW융합바이오전공) (SW융합콘텐츠전공) (SW융합경제경영전공) (SW융합법학전공) (글로벌SW융합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융합학부 (SW융합바이오전공) (SW융합콘텐츠전공) (SW융합경제경영전공) (SW융합법학전공) (글로벌SW융합전공)</li> </ul>
	음악·예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영화전공) (뮤지컬전공)</li> <li>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패션산업디자인전공)</li> <li>음악학부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국악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영화전공) (뮤지컬전공)</li> <li>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패션산업디자인전공)</li> <li>음악학부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국악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영화전공) (뮤지컬전공)</li> <li>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패션산업디자인전공)</li> <li>음악학부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국악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영화전공) (뮤지컬전공)</li> <li>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패션산업디자인전공)</li> <li>음악학부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국악전공)</li> </ul>

	대학	2025학년도	2024학년도	대학	2023학년도	2022학년도
		학부/(전공)	학부/(전공)		학부/(전공)	학부/(전공)
천안	외국어 대 학	○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일본학전공) (몽골학전공) (중동학전공) (베트남학전공)	○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일본학전공) (몽골학전공) (중동학전공) (베트남학전공)	외국어 대 학	○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일본학전공) (몽골학전공) (중동학전공) (베트남학전공)	○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일본학전공) (몽골학전공) (중동학전공) (베트남학전공)
		○ 유럽중남미학부 (독일학전공) (프랑스학전공) (스페인중남미학전공) (러시아학전공)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 유럽중남미학부 (독일학전공) (프랑스학전공) (스페인중남미학전공) (러시아학전공)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 유럽중남미학부 (독일학전공) (프랑스학전공) (스페인중남미학전공) (러시아학전공)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 유럽중남미학부 (독일학전공) (프랑스학전공) (스페인중남미학전공) (러시아학전공)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예술대학	○ 미술학부 (공예전공)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 미술학부 (공예전공)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예술대학	○ 미술학부 (공예전공)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 미술학부 (공예전공)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 뉴뮤직학부 (뮤직테크놀러지전공) (재즈퍼포먼스전공) (싱어송라이팅전공)	○ 뉴뮤직학부 (뮤직테크놀러지전공) (재즈퍼포먼스전공) (싱어송라이팅전공)		○ 뉴뮤직학부 (뮤직테크놀러지전공) (재즈퍼포먼스전공) (싱어송라이팅전공)	○ 뉴뮤직학부 (뮤직테크놀러지전공) (재즈퍼포먼스전공) (싱어송라이팅전공)
스포츠과학 대 학	○ 국제스포츠학부 (운동처방재활전공)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 국제스포츠학부 (운동처방재활전공)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스포츠과학 대 학	○ 국제스포츠학부 (운동처방재활전공)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 국제스포츠학부 (운동처방재활전공)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바이오융합 대 학	○ 생명자원학부 (식량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환경원예학전공) (녹지조경학전공)	○ 생명자원학부 (식량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환경원예학전공) (녹지조경학전공)	생명공학 대 학	○ 생명자원학부 (식량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환경원예학전공) (녹지조경학전공)	○ 생명자원학부 (식량생명공학전공) (동물자원학전공) (환경원예학전공) (녹지조경학전공)	
	○ 의생명과학부 (의생명시스템학전공) (생명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 의생명과학부 (의생명시스템학전공) (생명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 의생명공학부 (의생명공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 의생명공학부 (의생명공학전공)	
			공공.보건 과학대학		○ 바이오헬스융합학부 (바이오헬스디자인전공) (바이오헬스디바이스전공) (바이오헬스데이터전공)	

◎ 2026학년도

	대학	2026학년도
		학부/(전공)
죽전	사회과학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부동산학부 (도시지역계획학전공) (부동산학전공)</li> <li>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저널리즘전공) (영상콘텐츠전공) (광고홍보전공)</li> </ul>
	경영경제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li> </ul>
	공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융합소재공학전공)</li> <li>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li> </ul>
	AI융합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융합학부 (SW융합바이오전공) (SW융합콘텐츠전공) (SW융합경제경영전공) (SW융합법학전공) (글로벌SW융합전공)</li> </ul>
	음악·예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영화전공) (뮤지컬전공)</li> <li>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패션산업디자인전공)</li> <li>음악학부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국악전공)</li> </ul>

	대학	2026학년도
		학부/(전공)
천안	외국어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일본학전공) (몽골학전공) (중동학전공) (베트남학전공)</li> <li>유럽중남미학부 (독일학전공) (프랑스학전공) (스페인중남미학전공) (러시아학전공)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li> </ul>
	예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학부 (공예전공)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li> <li>뉴뮤직학부 (뮤직테크놀로지전공) (제즈퍼포먼스전공) (싱어송라이팅전공)</li> </ul>
	스포츠과학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스포츠학부 (운동처방재활전공)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li> </ul>
	바이오융합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명공학부 (식량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환경원예학전공) (녹지조경학전공)</li> <li>의생명과학부 (의생명시스템학전공) (생명과학전공) (미생물학전공)</li> </ul>

[별표 2] 학과(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

<개정 2011.11.10., 2012.2.1., 2013.2.19., 2013.12.26., 2014.12.26., 2015.04.22., 2015.11.20., 2019.11.15., 2020.02.28., 2021.7.23., 2022.5.18., 2023.8.16., 2024.2.29., 2025.5.28., 2026.5.7.>

캠퍼스 Campus	대학 College	소속 School/Department	학위 Degree	전공 Major	
죽전 Jukjeon	문과대학 Humanities	국어국문학과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문학사 Bachelor of Arts	국어국문학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사학과 History	문학사 Bachelor of Arts	사학 History	
		철학과 Philosophy	문학사 Bachelor of Arts	철학 Philosophy	
		영미인문학과 British and American Humanities	문학사 Bachelor of Arts	영미인문학 British and American Humanities	
		법과대학 Law	법학과 Law	법학사 Bachelor of Laws	법학 Law
			사회과학 대 Social Science	정치외교학과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학사 Bachelor of Politics
	행정학과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사 Bachelor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도시계획·부동산학부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도시계획학사 Bachelor of Urban Planning		도시·지역계획학 Urban and Regional Planning	
		부동산학사 Bachelor of Real Estate		부동산학 Real Estate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Media Communication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사 Bachelor of Media Communication		저널리즘 Journalism	
		영상콘텐츠 Media Content		영상콘텐츠 Media Content	
				광고홍보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상담학과 Counseling	문학사 Bachelor of Arts		상담학 Counseling	
	경영경제대학 Business and Economics	경제학과 Economics		경제학사 Bachelor of Economics	경제학 Economics
		무역학과 International Trade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무역학 International Trade
		경영학부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산업경영학과(야) Industrial Management(Evening)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회계학 Accounting	
			산업경영학 Industrial Management		
		공과대학 Engineering	전자전기공학과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전자전기공학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융합반도체공학과 Convergence Semiconductor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융합반도체공학 Convergence Semiconductor Engineering
	고분자시스템공학부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융합소재공학 Materials Innovation Engineering	
	인프라건설공학과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인프라건설공학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화학공학과 Chemical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캠퍼스 Campus	대학 College	소속 School/Department	학위 Degree	전공 Major	
	AI융합대학 AI Convergence	소프트웨어학과 Software Science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소프트웨어학 Software Science	
		컴퓨터공학과 Computer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컴퓨터공학 Computer Engineering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Statistics and Data Science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 Statistics and Data Science	
		사이버보안학과 Cybersecurity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사이버보안학 Cybersecurity	
		인공지능학과 Artificial Intelligence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인공지능학 Artificial Intelligence	
		한문교육과 Sino-Korean Education	문학사 Bachelor of Arts	한문교육 Sino-Korean Education	
	사범대학 Education	특수교육과 Special Education	문학사 Bachelor of Arts	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	
		수학교육과 Mathematics Education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수학교육 Mathematics Education	
		과학교육과 Science Education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과학교육(물리) Science Education(Physics)	
		체육교육과 Physical Education	체육학사 Bachelor of Physical Education	과학교육(생물) Science Education(Biology)	
				체육교육 Physical Education	
		음악·예술대학 Music and Arts	도예과 Ceramic Arts	미술학사 Bachelor of Fine Arts	도예 Ceramic Arts
			디자인학부 Design	디자인학사 Bachelor of Design	커뮤니케이션디자인 Visual Communication Design
	패션산업디자인 Fashion Merchandise Design				
	공연영화학부 Theater and Film		문학사 Bachelor of Arts	연극 Theater	
				영화 Film	
	무용과 Dance		무용학사 Bachelor of Dance	뮤지컬 Musical	
				무용 Dance	
	음악학부 Music		음악학사 Bachelor of Music	피아노 Piano	
				관현악 Instrumental Music (Orchestral Instruments)	
				성악 Vocal Music	
				작곡 Music Composition	
	프리무스국제 대학 PRIMUS International College	국제경영학과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국제경영학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모바일시스템공학과 Mobile Systems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Biotechnology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바이오소재융합공학 Biotechnology	
		한국학과 Korean Studies	한국학사 Bachelor of Arts	한국학 Korean Studies	
		연기영상예술학과 Acting and Filmmaking	예술학사 Bachelor of Fine Arts	연기영상예술학 Acting and Filmmaking	

캠퍼스 Campus	대학 College	소속	학위	전공		
		School/Department	Degree	Major		
천안 Cheonan	외국어대학 Foreign Languages	아시아중동학부	문학사	중국어학 Chinese Studies		
				일본학 Japanese Studies		
				몽골학 Mongolian Studies		
				중동학 Middle Eastern Studies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Bachelor of Arts	베트남학 Vietnamese Studies		
				독일학 German Studies		
				프랑스학 French Studies		
		유럽중남미학부	문학사	스페인중남미학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러시아학 Russian Studies		
				포르투갈브라질학 Portuguese and Brazillian Studies		
		European and Latin American Studies	Bachelor of Arts	영어 English Language		
				글로벌한국어 Global Korean Language		
				영어 English Language		
		공공인재대학 Public Service	공공정책학과 Public Policy	행정학사 Bachelor of Public Administration	공공정책학	
	공공정책학과(야) Public Policy (Evening)				공공정책학	
	사회복지학과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	
	해병대군사학과 Marine Corps Military Studies				군사학	
	식품자원경제학과 Food and Resource Economics				식품자원경제학	
	수학과 Mathematics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수학
	물리학과 Physics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물리학
	화학 Chemistry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화학
	식품영양학과 Food Science and Nutrition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식품영양학
	신소재공학과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신소재공학
	에너지공학과 Energy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에너지공학
	경영공학과 Management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경영공학
	제약공학과 Pharmaceutical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제약공학			
	과학기술대학 Science and Technology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Pharmaceutical Engineering		

캠퍼스 Campus	대학 College	소속	학위	전공
		School/Department	Degree	Major
	바이오융합대학 Bio-convergence	생명공학부	농학사	식량생명공학 Crop Science and Biotechnology
				동물생명공학 Animal Biotechnology
		Biotechnology	Bachelor of Agriculture	환경원예학 Environmental Horticulture
				녹지조경학 Landscape Architecture
				의생명시스템학 Biomedical Systems
		의생명과학부	공학사 Bacheolor of Engineering	생명과학 Biological Sciences
			이학사	미생물학 Microbiology
		Biomedical Sciences	Bachelor of Science	식품공학 Food Engineering
		식품공학과 Food Engineering	공학사 Bacheolor of Engineering	코스메디컬소재학 Cosmedical Materials
		코스메디컬소재학과 Cosmedical Materials	공학사 Bacheolor of Engineering	
	예술대학 Arts	미술학부	미술학사	공예 Crafts Design
				동양화 Oriental Painting
		Fine Arts	Bachelor of Fine Arts	서양화 Fine Arts
				조소 Sculpture
				문예창작 Literary Creative Writing
		Literary Creative Writing	Bachelor of Arts	문예창작 Literary Creative Writing
		뉴뮤직학부	음악학사	뮤직테크놀로지 Music Technology
				재즈퍼포먼스 Jazz Performance
	New Music	Bachelor of Music	싱어송라이팅 Singer-Songwriting	
			생활체육학 Recreation and Leisure Sports	
	스포츠과학대학 Sports Science	Recreation and Leisure Sports	체육학사 Bachelor of Sports Science	스포츠경영학 Sports Management
		스포츠경영학과 Sports Management	체육학사 Bachelor of Sports Science	운동처방재활 Exercise Prescription and Rehabilitation
		국제스포츠학부	체육학사	국제스포츠 International Sports Studies
				태권도 Taekwondo
		International Sports Studies	Bachelor of Sports Science	골프 Golf
		의과대학 Medicine	의예과 Pre-medical Course	-
	의학과 Medical Science		의학사 Doctor of Medicine	의학 Medical Science

캠퍼스 Campus	대학 College	소속	학위	전공
		School/Department	Degree	Major
	보건과학대학 Health Sciences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Bachelor of Public Health Science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물리치료학
		Physical Therapy	Bachelor of Physical Therapy	Physical Therapy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보건행정학
		Health Administration	Bachelor of Public Health Science	Health Administration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
		Dental Hygiene	Bachelor of Dental Hygiene Science	Dental Hygiene
	심리학과	사회과학사	심리학	
	Psychology	Bachelor of Social Science	Psychology	
	간호대학 Nursing	간호학과	간호학사	간호학
		Nursing	Bachelor of Nursing	Nursing Science
	치과대학 Dentistry	치의예과	-	치의예
		Pre-dentistry	-	Pre-dentistry
		치의학과	치의학사	치의학
		Dentistry	Doctor of Dental Surgery	Dentistry
약학대학 Pharmacy	약학과	약학사	약학	
	Pharmacy	Doctor of Pharmacy(Pharm.D.)	Pharmacy	

[별표 3] 공학인증 대학의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

<개정 2011.11.10., 2013.2.19., 2013.12.26., 2015.04.22., 2015.11.20., 2017.7.26., 2020.02.28., 2025.5.28.>

캠퍼스 Campus	대학 College	소속 School/Department	공학전문교육과정		공학일반교육과정	
			학위(Degree)	전공(Major)	학위(Degree)	전공(Major)
죽전 Jukjeon	공과대학 Engineering	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분자공학 전문 공학사	고분자공학 (전문교육과정)	공학사	고분자공학 (일반교육과정)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Bachelor of Science in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Bachelor of Science	Engineering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전문 공학사	기계공학 (전문교육과정)	공학사	기계공학 (일반교육과정)
		Mechanical Engineering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Bachelor of Science	Engineering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문 공학사	건축공학 (전문교육과정)	공학사	건축공학 (일반교육과정)
		Architecture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Bachelor of Science	Engineering

[별표 4] 건축학교육인증 과정의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  
 <개정 2013.2.19.>

캠퍼스 Campus	대학 College	소속 School/Department	학위 Degree	전공 Major
죽전 Jukjeon	공과대학 Engineering	건축학부	건축학사	건축학
		Architecture	Bachelor of Architecture	Architecture

[별지 서식 1-1] 국문 학위증(서체 : 나눔명조 OTF Bold체)

<개정 2012.12.13., 2019.11.15.>

#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의 학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소속 : ○○대학 ○○학과(전공)  
학위명 : ○○학사(○○전공/○○과정)

○○○○년 ○○월 ○○일

단국대학교 총장 ○○박사 ○ ○ ○



제 호  
학위번호 :

[별지 서식 1-2] 영문 학위증(서체 : 제목, 성명, 학위명은 HY견명조체, 그 밖의 내용은 Palatino Regular체)  
<신설 2012.12.13.> <개정 2019.11.15., 2025.12.29.>

# DANKOOK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on*

**(English name)**

the degree of

**(Degree)**

in

**(Major)**

*with all the honors,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Da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on the (day) day of (month)  
in the year of (year)*



---

(English name), Ph.D.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별지 서식 1-3] <삭제 2025.7.23.>